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안 검토결과 및 징계 처분 요구서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책임규명 권고안 및 사건별조사보고서 검토 -

2018.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

[목 차]

I. 검토실시 개요	1
II. 책임규명 권고안	4
1. 책임규명 권고안 내용	4
2. 징계권고 대상자 명단	5
III. 검토결과 총괄	6
1. 검토결과	6
2. 부당한 외압 과정	7
3. 처분요구 개요	9
4. 징계시효 결과	11
IV.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등 검토결과	13
1. 관계법령규정 현황	13
2. 정부의 지원배제 배경 및 경위	15
3. 예술위 배제지시 이행 경위	20
4. 징계 대상자 부당 업무처리	30
V. 개별 처분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사항(별첨)	61
붙임 1. 징계양정의 기준	
2.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권고 대상자 위반행위 일람표	
3. 책임규명 권고안 사건별 관련자 및 배제지시 전달과정	
4.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내용(별첨)	

I. 검토실시 개요

1. 검토배경 및 목적

○ 지난 2016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의혹 해소와 진실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에 특정한 정치적 성향(좌편향)에 따라 특정인·단체를 공공지원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위법한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 지시한 정황이 2015년 국정감사 교문위에서 파악되었으며 특별검사를 통한 사건조사 이외,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실행되었다.

○ 한편, 현 문체부(도종환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문화예술계 정치성향에 따라 특정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실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향후 제도 등 개선을 위하여 문체부 훈령을 근거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¹⁾’(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였으며 2017.7.31.부터 2018.6.30.까지 1년 여간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등 15개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8.5.8.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18.6.27.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며,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는 15개 기관 130명에 대해 수사의뢰(26명), 징계(104명)를 권고하였고, 예술위는 문체부를 통해 2018.7.3. 예술위에 23명에 대한 징계권고를 통보 받았다.

1) 2017년 4월 26일 문&대통령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들과 조사위원회 설치를 정책협약 하였으며,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17.7.31. 민관협동의 진상조사기구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2명, 민간위원 16명, 문체부 공무원 3명)를 출범함.

○ 예술위는 진상조사의 조사결과와 그 과정을 존중하고 책임규명 권고(징계)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블랙리스트 이행 관련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진상조사위의 사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예술위 규정을 근거로 징계처분 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만,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문체부 운영실태를 감사('17.6월 발표)하였으며, 동 감사에서 '문체부가 예술위에 행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검토중점 및 대상

○ 진상조사위가 징계를 권고한 예술위 임직원 23명의 혐의사실에 대해 진상조사위의 '사건조사결과보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대조·확인을 통해 위반 행위자와 행위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징계)안과 사건조사결과보고서는 검찰, 감사원, 자체감사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문체부 훈령에 의한 조사 기구로 예술위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2항에 명시된 대외감사와 동일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건조사 결과 내용을 인용하되 징계권고 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증거자료와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는지 등을 재확인 하였다.

○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17.6월)와 예술위 자체조사(2017.1월~2017.5월)를 참고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작동 경위와 그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건 관련자들의 권한에 따른 책임과 경중을 면밀히 파악하여 처분하고자 하였다.

3. 검토실시 과정

○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2018.6.27.)’이 문체부로부터 예술위로 2018.7.3. 통보 되었으며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 일체 문서(복사본)를 2018.7.27.부터 2018.7.31. 2일 간 수령하였다.

○ 사건조사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를 분류하고 2018.8.16.부터 2018.8.31. 까지 책임규명 권고(징계)안에 적시된 징계권고 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이 위반행위가 사건조사결과보고와 증거서류로 확인되는지 등을 1차 검토하였다.

○ 징계권고 대상자의 위반행위가 명확치 않은 경우 증거자료, 문답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2018.9.1.부터 징계처분을 위한 위반행위를 특정 하였으며 징계권고 대상자별 징계시효 등을 검토하였다.

○ 다만, 본 조사는 예술위 감사부가 실지감사로 파악된 것이 아닌 진상조사위, 감사원 감사결과, 예술위 자체조사 등 서면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일부 관련자들의 위반행위를 명백히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진상조사위의 사건조사결과보고서와 증거자료 등에 있는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징계권고 대상자의 혐의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검토결과 처리

○ 2018.10.11. 예술위 상임감사, 감사자문위원(신광조 위원, 임선숙 위원, 임두택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징계처분을 위한 양정의 결정 등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예술위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요구서는 예술위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장)에게 통보, 소집을 요구해야 되나 본 사건에 다수의 임직원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보고서와 더불어 징계요청서를 함께 예술위 상임감사가 예술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II.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1. 책임규명 권고안 내용

○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예술위에 관련 대상자 23명을 예술위 행동강령(개정 전) 제4조, 제6조, 제8조 위반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징계를 권고하였다.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요지】

□ 권고내용 :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한 예술위 대상자 징계

□ 징계권고 대상자 : 총 23명

※ 예술위 수사·고발 의뢰 대상자(3명)은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직접 전달

□ 징계권고 근거규정 : 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상의 의무 및 징계

- 관련조항 :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조(특혜의 배제),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3조(징계)

□ 징계혐의사실

징계대상자들은 아래 「표」 기재 각 「비위행위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배제를 실행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문화국가의 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 및 문화기본법의 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예술위 행동강령(이하 규정명 생략) 제4조를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및 그에 따르는 행위, 제6조를 위반하여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제8조를 위반하여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응한 행위 등에 해당함.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예술위 행동강령 제33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함.

※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상세내용은 <붙임 4> 별첨자료 참조

2. 징계권고 대상자 명단

- 비상임 위원(5기) : 2명(現 해촉)
- 사무처 임직원 : 21명 (퇴직자 4명, 現 근무자 17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징계권고 대상자】

구분	성명	당시 직책	현재 직책	비고
위원 (2명)	AAA	비상임위원	-	해촉
	BBB	비상임위원	-	해촉
사무처 (21명)	CCC	문학지원부장	문학나눔본부장	
	DDD	극장운영부장	전문위원	
	EEE	감사부장	전문위원	
	FFF	공연지원부장	전문위원	
	GGG	기획조정부장	순회사업부장	
	HHH	예술진흥본부장	휴직	
	III	공연예술본부장	공연예술본부장	
	JJJ	예술인력개발원장	경영전략본부장	
	KKK	창작지원부장	협력개발부장	
	LLL	예술확산본부장	전문위원	
	MMM	공연예술센터장	-	퇴사
	NNN	사무처장	-	퇴사
	OOO	사무처장	-	퇴사
	PPP	문화복지부장	휴직	
	QQQ	무대예술부장	전문위원	
	RRR	공연운영부장	성과평가부장	
	TTT	예술진흥본부장	창의예술인력센터장	
	SSS	국제교류부장	휴직	
	YYY	창작지원부장	문화올림픽TF팀장	
ZZZ	공연지원부장	-	퇴사	
WWW	공연지원부장	공연지원부장		
계		23명		

Ⅲ. 검토결과 총괄

1. 검토결과

○ 2013년 9월~ 11월 문화예술계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 되자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은 2013년 말부터 문체부에 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 2013년과 2014년에 문체부는 이념·편향적 작품 선정이 논란이 되자 2014년 초부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은 각종 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자격 심사를 요구하며

- 2014년 초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진보성향 작품단체 등에 대한 예술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체부 예술정책관실에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위 등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고 그 중 특정인사·단체를 선정·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

○ 2014년 6월부터 문체부는 예술·영화·출판 등 각 분야 담당부서의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실적 등을 이행관리 하고 이를 문화체육 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예술위 문예기금 사업도 위 TF에서 관리되었다.

○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는 2015년도 문예기금 공모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배제대상 문화예술인·단체가 어떤 사유로 배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등 설명 없이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예술위는 문체부(예술정책과)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아야하는 소속 공공기관으로 청와대와 문체부가 실행을 지시한 문예기금 공모사업 전반에서 걸친 부당한 배제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 예술위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문체부는 이를 청와대 및 국정원에 송부, 청와대 및 국정원으로부터 특정예술인·단체가 검토되고 문체부를 경유 배제지시를 하달하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종용하거나 압박하였다. 문체부의 지시에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경우 2016년도에는 해당사업들이 폐지되었다.

2. 예술위에 대한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외압 과정

○ 2014년 4월~9월 경 ‘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제도’를 개편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2014. 10월 경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중 ‘문화예술분야’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공모사업에서 지원배지가 실행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사업들이 파행되었다.

○ 2014년 블랙리스트 실행 초기, 청와대는 국정원의 보고를 통해 예술위 임직원과 심사위원 등이 좌편향된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위가 지원하는 사업이 이념편향적인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고, 예술위 기관의 성향을 문제시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정부 초기 박정희-●●●● 두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개구리>,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다룬 연극<아이리스 PC방> 등 일련의 정권 비판적인 작품에 문예기금이 지원된 것을 ●●●이 지적하였다.

○ <2014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이 끝나 후 청와대는 국정원의 보고에 따라 문체부에 문예기금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좌성향 단체나 국가보안법 관련 공연을 올렸던 단체 등이 선정되는 등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예술위 심사위원,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특정예술인·단체를 지원 배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외압이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 이에, 문체부(유○○ 장관)는 문체부 내에 ‘건전콘텐츠T/F’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예술위원회 심의제도 개편안’ 보고하였으며,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진행과정을 위 TF에서 지원배제를 논의하는 등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예술위의 배제지시 실행 및 이행 등을 관리하였다.

○ 2015년 5월 경 문체부는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이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1)배제 확인 대상 지속 증가 및 확인과정 지연, (2)심의 지연 등으로 예술단체 불만 누적, (3)부정적 여론화 추세, (4)문학, 연극은 특이사항 증가로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상황 등이 발생하자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을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 201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공모제도’에서 ‘기획사업’ 위주로, 심사 제도를 ‘책임심의제도’에서 ‘심의위원 풀(pool)제도’로 전환하는 등 사업개편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15.11.1.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체부는 좌성향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 예술 지원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12월 확정) 이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제에 동 개편 작업을 철저히 추진해줄 것’을 교문수석에게 주문하였다.

○ 2015년 가을 부터 2016년 1월 초 사이, 문체부 예술국은 예술위원회 사무처를 불러 2016년 문예기금 사업 개편을 위한 회의를 하였으며, 문체부는 2015.12.8.~2016.1.8. <2016년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을 최종 확정 하였다.

○ <2016년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은 결국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개편안으로 인하여 이전의 공모사업이 폐지되는 등 정부의 심의개입이 용이한 사업구조를 변경하게 되었다.

3. 징계권고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 및 처분요구

□ 징계처분 결과

구분	대상자	징계자	중징계	경징계	주의 (시효종료)	비고
비상임위원	2	0	-	-	-	해촉 2명
사무처	21	16	5	8	3	퇴직자 4명 선행처분 완료 1명
계	23	16	5	8	3	

구분	대상자	징계처분			주의처분	비고
		정직	감봉	견책		
비상임위원	2	-	-	-	-	해촉 2명
사무처	21	5	2	6	3	퇴직자 4명 선행처분 완료 1명
계	23	5	2	6	3	

□ 개인별 징계처분

구분	성명	위반규정(내용)	처분요구	비고
위원	AAA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청렴의무 준수와 책임) 및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해촉
	BBB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청렴의무 준수와 책임) 및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해촉
사무처	CCC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견책’	-
	DDD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견책’	-
	EEE	감사규정 제11조(의무와 책임) 감사규정 제17조(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정직’	-

구분	성명	위반규정(내용)	처분요구	비고
	FFF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견책’	-
	GGG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견책’	-
	HHH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정직’	-
	III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감봉’	-
	JJJ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엄중주의’	징계 시효 종료
	KKK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견책’	-
	LLL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감봉’	-
	MMM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	퇴사
	NNN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	퇴사
	OOO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	퇴사

구분	성명	위반규정(내용)	처분요구	비고
	PPP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엄중주의’	징계 시효 종료
	QQQ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엄중주의’	징계 시효 종료
	RRR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정직’	-
	TTT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정직’	-
	SSS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정직’	-
	YYY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	선행 처분 완료
	ZZ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	퇴사
	WWW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견책’	-

※ 감사부 의견 : 문체부 장관인 김○○(2015년), 조윤선(2016년)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 국정농단의 큰 책임이 있는 바, 위 두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직원에 대해서 그 공적조서를 검토 하시고 진상조사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형사유로 포상 실적을 반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징계시효 검토결과

구분	성명	위반행위 일자	징계시효 여부	비고
위원	AAA	2014.12월 ~ 2015.7월	적용 불가	해촉
	BBB	2012.12.5. ~ 2016.3.2.	적용 불가	해촉
사무처	CCC	2016.2월, 7월 / 2015.10.8., 11월 / 2014.11월~12월	시효 미완료	
	DDD	2016.2월	시효 미완료	
	EEE	2015.11.11	시효 미완료	
	FFF	2016.1월 / 2014.10월~11월	시효 미완료	
	GGG	2015.12.31.	시효 미완료	
	HHH	2016.2월, 5.20, 6월, 7월 2015.3월, 6월, 9월~12월	시효 미완료	
	III	2016.1월~2월 / 2016.2.1.~2.5.	시효 미완료	
	JJJ	2015.2월, 4월 / 2015.5.22., 6.11.	시효 종료	2015.6월 위반
	KKK	2015.10.15.~10.19 / 2015.11.19.	시효 미완료	
	LLL	2015.10.17.~10.18 / 2014.12월	시효 미완료	
	MMM	2015.10.18. / 2014.11.7.~2015.4.3	적용 불가	퇴사
	NNN	2013.11월 ~ 2014.2월	적용 불가	퇴사
	OOO	2012.6.1.~2015.8.23.	적용 불가	퇴사
	PPP	2014.11월 / 2014.12.22	시효 종료	2014.12월 위반
	QQQ	2015.4.3.	시효 종료	2015.4월 위반
	RRR	2016.8월, 6월, 5.20. / 2015.4.3.	시효 미완료	
	TTT	2016.6.1.~6.17. / 2015.1월~12월 / 2014.3월, 11월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2015.11월 징계
	SSS	2016.5.20, 4월 / 2015.10.17.~10.18.	시효 미완료	
YYY	2015.1월~8월 / 2014.3월, 11월, 12월	선행 처분 (시효 종료)	2015.11월 징계	
ZZ	2016.1월~2월	적용 불가	퇴사	
WWW	2016.7월~8월	시효 미완료		

IV.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등 검토결과

* 본 내용은 예술위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으로 진상조사위와 감사원 감사, 예술위 자체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결과 중 청와대 및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의 경위 내용을 정리하였다.

* 예술위는 특별검사 조사와 감사원 감사과정을 통해서 당시 정부의 지원 배제 명단과 실행 과정의 전모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

1. 관계법령·규정 현황

가. 예술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등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위 위원(위원장 포함)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법 제33조에 의거 사무처를 두고 있다.

○ 한편, 문체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제2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및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을 위촉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도록 예술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예술위 임직원의 책무와 의무

○ 예술위 임직원(위원 포함)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의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직자로서 관계법령을 준수,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또한, 윤리지침에 따라 임직원(위원 포함)은 공공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 해야 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임직원은 (개정 전)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조(특혜의 배제),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무가 없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행동기준과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예술위 행동강령(개정 전) 조문내용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비록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과 활동, 임원 임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위법·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무가 없는 행위를 요구하였다면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위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소명하고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2. 정부의 지원배제 배경 및 경위

○ ◆◆◆ 정부는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 정부는 2013년 ‘문화융성 기반정비’라는 블랙리스트 입안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소위 ‘좌파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에 대한 편향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에 기반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다.

○ 두 문건 모두 좌파 문화예술계를 ‘문화권력’, ‘국민의식 좌경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문화 세력을 육성하고 좌파 문화예술계를 “고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 블랙리스트 관련 입안 문건이 만들어 진 후,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블랙리스트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거쳤다. 특히, ○○○○ 정부에서는 국정원과 문체부 두 기관을 가동하였다.

가. ◆◆◆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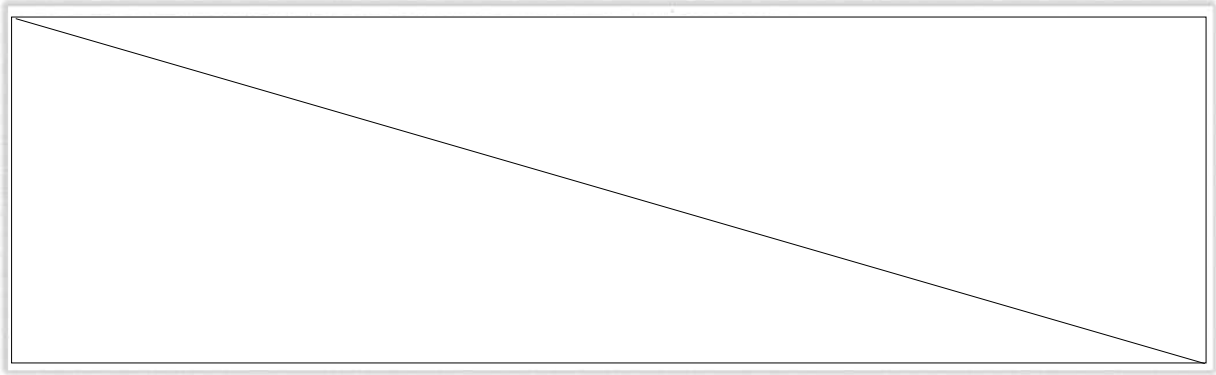
○ ◆◆◆ 정부에서는 방송이나 영화 등 중점을 두었으나, ○○○○ 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선정 대상에서 좌파 문화예술인(단체)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모든 문화 예술인(단체)의 작품내용을 사찰 및 검증대상으로 상정하고, 문체부와 예술위 등에서 운용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한 모든 예술인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

○ ◆◆◆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는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원세훈에 의하여 수시로 언론은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한 ‘좌파 연예인 대응 TF(대상자 총 82명-특히 영화인(60명)에 집중)’를 구성하고 정부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와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 당시 청와대는 문화연예계 실태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으며, 국정원은 이에 ‘VIP 일일보고’, ‘BH요청자료’ 등 형태로 보고하였다. 사찰과 외압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국정원이(국정원개혁위원회가 파악한 것) 23건이며, 청와대 사찰 등은 6건으로 총 29건이다.

나. ○○○○ 정부

○ ○○○○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인 후 청와대-국정원-문체부 등이 모두 관여해 만들어졌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기관(예술위)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심사체계 변경 등 과거에 비해 체계적으로 가동되었다.



○ ●●● 정부에

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발점은 2013년 3월 15일 국정원에서 청와대 정보보고를 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조성>으로 시작되었다.

○ ●●●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5일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임 하자, 8월 16일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라는 보고를 통해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 하였으며,

○ ●●●은 2013년 8월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를 받은 후 2013년 9월 문체부(★★★ 장관)에게 ‘특정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 지시’하였으며 문체부는 관련대책을 보고하고 2013년 9월 9일 문체부 내에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하였다.

○ 2014년 3월 19일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13.8.16.)와 관련된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청와대 보고에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을 첨부하였다.

○ ●●●●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명단은 ① 국정원 자체 생산한 리스트와 ②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한 명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국정원 자체 생산한 블랙리스트 명단(289건)은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전략으로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종 정부비판 단체를 광범위하게 사찰해 지원배제 인사들을 등급(A,B,C)으로 나누었으며,

- ②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한 명단(163건)은 국정원이 생산한 명단과 문체부 자체자료의 통합본으로 국정원이 거론한 인물 이외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성향을 평가하여 생산하였다.

* 국정원 자체 리스트 :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인물현황(249명)은 문화예술단체 대표자의 경력과 활동(정부비판 작품 저술, 시국선언, 야권인사지지 등), 문화예술인의 활동전력 등에 따라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문학 48명, 미술 28명, 연극 22명, 음악 30명, 영화 104명, 방송 및 기타 10명으로 분류

* 국정원의 문체부 선별·통보 리스트 : 국정원 명단과 중복된 15명을 제외하면 기존 국정원 명단에 없는 148명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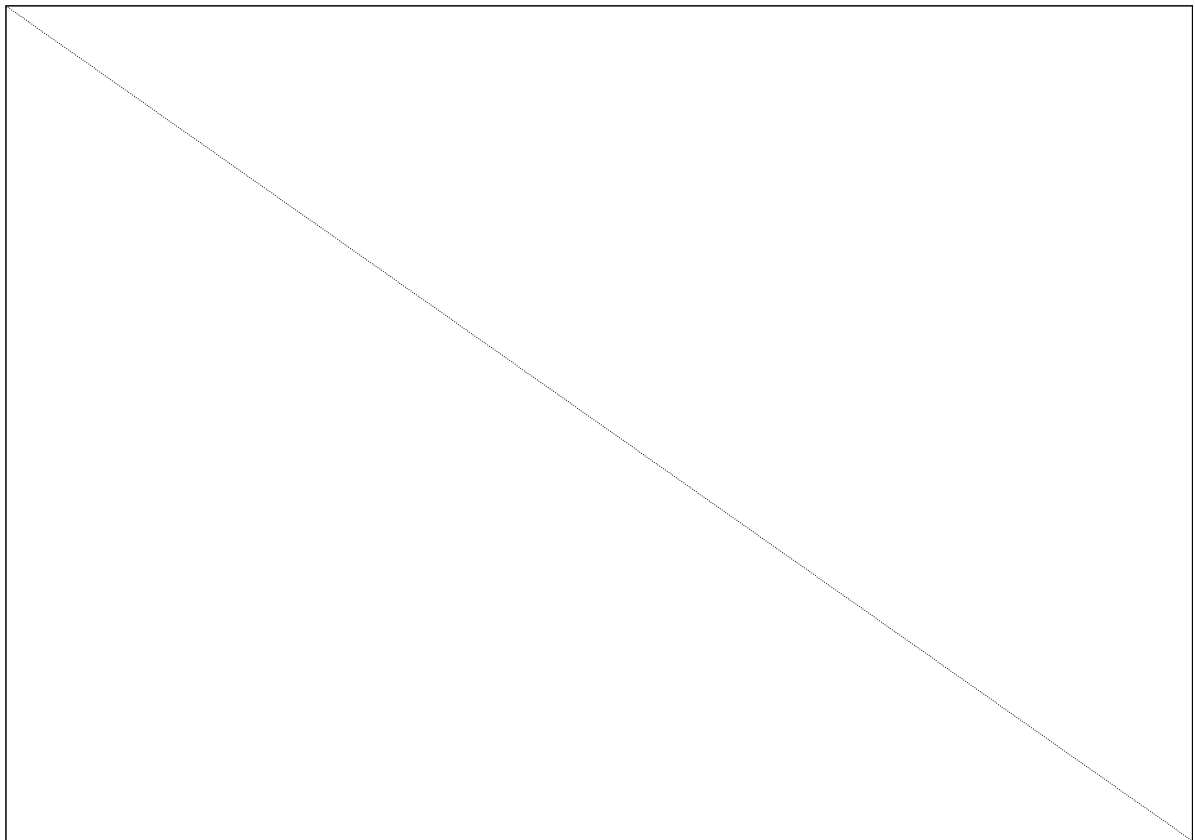
○ 한편, 문체부는 지원배제 자체 검증이 여의치 않자,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5개월 여간 국정원에 8,500명에 대한 인물 검증을 의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위) 지원사업 배제 대상 리스트를 만들었다.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검증 요청 인원 및 국정원 선별통보 인원		
연도	문체부 검증요청 인원	국정원 선별통보 인원
2014년	1400명	102명
2015년	3700명	177명
2016년	3400명	69명
총계	8500명	348명

○ 이와 별도로, 2015년 4월 경 청와대 행정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594명), ‘세월호 시국선언(754명), 문&& 후보 지지선언(6,517명), 박** 후보 지지선언(1,608명) 등을 지정해 알려주면서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오○○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③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 정부에서 청와대는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으며, 블랙리스트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보조금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실행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문체부 등 정부부처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주체로 삼았다.

○ ●●●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실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3. 한국예술위원회의 배지지시 이행 경위

가. 청와대 및 문체부의 문예기금 사업에 대한 외압 관련

○ 2013년 3월 15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조성>으로 시작으로, 2013년 8월 5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 부임 후 “전 부처 좌편향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지시(2013년 12월 말)하였고, 2014년 1월 초에는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등 특정 부처를 짚어 NGO에 지급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 문체부(유○○ 장관)는 2014년 1월 말 경, 좌편향 민간 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으로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이념시비가 지속되어 있어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 2014년 3월 27일 청와대는 특정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 비서관 신○○은 2014년 4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민간단체 보조금TF>조직을 만들어 전 부처 정부보조금의 민간단체 지원을 전수조사 하고, 그 중 좌파 단체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을 ●●●, ○○○에게 보고 후 문체부 등 관련부처에 하달하였다.

○ 문체부는 2013년 8월 비서실장으로 ●●●이 부임 후 청와대의 기조가 바뀌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3년 9월 9일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연극 ‘개구리’ 논란 대응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문체부 1차관 주제, 주 1회 회의)하여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기 전까지 청와대의 지시사항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창구로 역할을 하였다.

* 2013년 9월 연극<개구리>가 ###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한편, @@@·●●● 대통령을 풍자하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함. 이에 문체부는 정치편향적 소재 내용을 배제토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2013.9.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구성함.

○ 그러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행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건전 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이 변경하여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원배제 명단이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 2014년 8월 문체부 장관으로 김○○이 부임 이후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3명을 강제사직(2014년 10월 경) 시키고, 2014년 10월 21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각 각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후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등 3대 분야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 변경(심사위원 위촉절차, 심사제도) 등 지시, 배제명단 하달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 한편,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은 예술위(문예기금)을 지도·감독하는 자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를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 작성, 보고, 관리하였으며, 동년 8월 15일부터 9월 27일 까지는 업무를 인수받은 사무관 인○○이 관리하였으며 예술위에 지원배제 이행을 지시하였다.

○ 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의 시초는 2014년 2월 청와대로부터 문체부가 전달받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명단으로 관리리스트에 1차 배제대상 문화예술인 16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문체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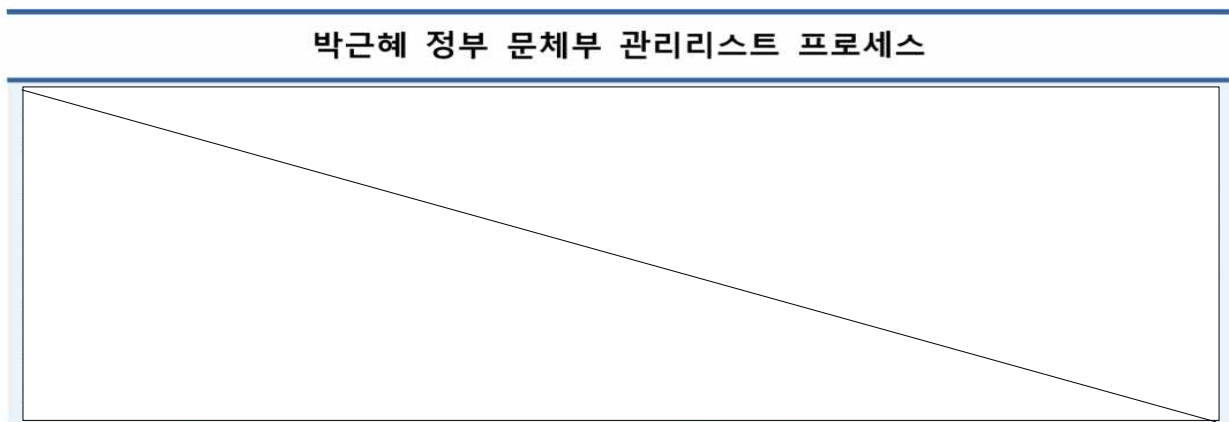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예술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과 협업을 통해 관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 또한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7월 6일자 정무리스트”가 2015년 7월 5일 경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예술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105명을 포함한 113명의 문건을 전달’받아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에게 전달하였고, 오○○은 예술위 해당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부장들에게 유선 또는 직접 대변의 방식으로 전달하여 이행을 지시하였다.

○ 더불어, 문체부 오○○은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받아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작성한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리스트를 명단을 예술위 등 복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원배제 지시를 하였으며, 문체부 각 과마다 필요시 위 명단이 전달되는 등 지원배제가 실행되었으며,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예술가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 2014년 11월 경부터, 문체부는 ‘2015년 문예기금 정기공모 신청자 명단’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고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과 지원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 관리리스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나. 예술위가 부당지시 외압을 받은 시점과 경위

○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정기공모를 준비하던 중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문예기금 지원심의 규정 규정과 추진일정 등 관련자료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 그리고, 2014년 9월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문예기금 사업의 공모 및 지원심의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의는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주재하였다.

- 회의는 문체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 오○○ 사무관 (예술위 담당자)이 참석하고, 예술위는 사무처장과 경영전략본부장, 예술진흥본부장, 문화나눔본부장이 참석하였다.

- 문체부의 주요 전달사항은 ① 2015년 문예기금 정기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예술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상황으로 ②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니 ③ 조치가 가능한 상황(지원심의 제도 등의 구조 및 진행방식)인지 여부를 점검하여 심의진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 회의 당시 예술위는 지원심의를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으며, 지원심의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권한이며 심의개입 명분과 방법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 그러나, 문체부는 2015년도 정기공모 사업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였다.

- ① 2015년도 정기공모 지원사업의 진행 단계마다 문체부(예술정책

과)와 협의 할 것

- ② 심의 전에 일정, 지원신청 내역(명단 등), 심의위원 구성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 할 것

- ③ 심의결과는 문체부로 통보하고, 결과 발표는 승인을 받은 후 발표와 해당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 문체부와의 회의 후, 당시 ★★★ 예술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예술위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권 차원에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 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문체부가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 예술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문체부와의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문체부의 요구가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으나 2013년 박근형 연출가의 <개구리> 공연과 2014년 홍○○ 작가의 <세월오월> 등 정치적, 사회적 논란거리가 발생하자 문체부가 사전예방 차원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또한, 당시 특정예술인(단체)에 대한 배제 등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문체부의 지시는 옳지는 않지만 미국 국립예술기금(NEA)과 ‘안드레 세라노’의 소송 이후 NEA의 예산이 막대하게 삭감되었던 경우와 같이 당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였다. 지원예산의 삭감은 결국 실질적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예술위는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부의 지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면 대처하기로 하였다.

○ 이후, 2015년 문예기금 정기공모 사업이 본격 시행된 2014년 12월경

부터 문체부는 지원심의에 지원배제 대상자의 지원 제외 등 구체적인 다음과 같이 이행을 지시하였다.

- 문체부는 문예기금 사업의 모든 지원심의 일정, 지원신청 접수내역과 심의위원 명단 제출을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전화로 요구하였으며 예술위는 심의위원 선임과 차기 위원 선임 일정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 이후 문체부는 전달된 지원신청 접수내역 중 ‘지원이 곤란한 배제 대상’명단을 유선전화 또는 직접 만나 옮겨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였다.

○ 블랙리스트 실행 초기에는 예술정책과 이외 공연전통예술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지원배제 실행을 지시하였으나 2015년 후반부터는 예술정책과로 일원화 되었고, 2016년에는 다시 문체부의 여러 소관부서에서 직접 배제지시를 통보하였다.

다. 정부의 외압을 거부하지 못한 예술위 문제점

○ 예술위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문체부 장관의 권한인 예술위원장과 비상임 위원 임면권, 문예기금의 예·결산,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에서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관운영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또한, 당시 예술위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문예기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두려움이 존재하며,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청와대의 지시는 ‘반드시 배제할 예술가와 단체를 탈락시키지 못하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이미 심의가 끝났더라도 발표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실제 지원배제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원사업들은 2016년도에 사업자체가 폐지되었다.

○ 또한, 문예기금이 고갈 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업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 등 최근 몇 년간의 예산편성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이로 인한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 2008년 ◆◆◆ 정권 초기 예술위는 전(前) 김○○ 위원장이 문체부 장관(유○○)에 의해 강제 면직되어 기관 사상 초유의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 되어 예술위 운영시설이던 ‘예술자료원’과 ‘아르코예술극장’이 강제로 분리되어 조직이 축소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청사이전을 4년 앞두고는 구로구에 반강제적으로 임시청사로 마련 본관을 이동하는 등 큰 내홍을 겪어 정부의 지시와 압박을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 더욱이, 문체부의 지원배제 요구가 시작된 초기부터 2016년 10월 ●●● 정부의 국정논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까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실행배경과 규모, 더욱이 그 이유는 물론 지시를 하는 최고책임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체 확인 할 수 없었다.

○ 막연하게 ●●● 정부 초기에 발생한 2013년 박○○ 연출가의 <개구리>나 2014년 홍○○ 작 <세월오월>, 2015년 <김기종의 칼질> 작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사회적 논란으로 문체부의 지시가 외압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였으나 집권 정부의 과민한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라. 정부의 외압을 최소화한 노력과 자구책

○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는 2015년도 문예기금 공모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원배제 초기에는 문체부를 통해 전달받은

배제대상이 동일한데 시간차를 두고 달리 전달되었거나, 배제대상 검토과정이 오래 걸려 심의일정을 넘어 전달되는 등 사업운영이 어렵게 진행되었다.

○ 또한, 배제대상 문화예술인·단체가 어떤 사유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등 설명 없이 전달되었고, 배제대상이 너무 많이 전달되어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체부에 건의와 설득을 통해 배제 건을 최소화 하려 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배제 반영을 거부하고 심의를 진행 하거나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다. 또한, 지원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고 지원하는 등 당시 정부의 부당한 배제지시에 따른 문화예술인·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의 외압을 최소화한 노력과 자구책>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지원필요성 건의 및 설득을 통한 배제 최소화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사업	‘실천문학’, ‘문학동네’에 대한 배제 철회 요청 및 ‘창작과비평’ 심의종료 후 설득하여 선정됨
	2015년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3차 심의까지 지원배제 문제점 제시하고 축소를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배제대상 14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였으나 문체부의 강한 외압으로 최종적으로 탈락함.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실현 및 본 공연지원	예술집단 페테, 극단돌파구 <고래>, 극단뽀뽀 <떠도는 땅> 3개 작품 선정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 초청 작가 임흥순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속 설득하여 선정됨
	2015년 민간국제교류지원	극당 하땅세,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이해경&이즈음 무용단, 한국연극학회, 아시아춤문화연구소,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 8개 단체 선정
	2016년 민간국제교류지원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 임흥순 작가의 국제교류사업,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이해경&이즈음 무용단, 타고 5건 지원
	2016년 국제창작레지던스 기획 파견	정○○ 작가 지원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소외계층문화순회 공모사업	연우무대, 극단 이루 등 우수한 단체 배제 제외 지속 설득, 지원배제 단체수를 12단체로 축소
	2015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작품 공모사업	연극분야 4개 선정작품 중 2개 작품 참여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극단 이루, 학전, 만종리대학로극장 3개처 선정
	2015년 공연예술창작신실 제공연	공상집단똥단지 1개처 선정
	2015년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	계간<공연과 이론> 및 합평회 2건 선정
	2015년 ARKO-PAMS협력사업지원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2016년 ARKO-PAMS협력사업지원	극단 초인, 박박parkpark 2건 선정
	201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사)밀양연극촌, (사)한국춤협회, 창무국제무용제,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5건 선정
	2016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극단연우무대, 극단 완자무늬 2건 지원
	2016년 공연예술창작신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공상집단 똥단지, 극단 수, 엔씨컴퍼니, 주식회사페이퍼 4개 단체 지원
지원배제 반영을 거부하고 심의한 사례	2016년 문학분야 공모사업	기간문화단체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문학활성화프로그램지원, 유망작가지원 등 2016년 문학분야 공모사업에서 지원배제 요구를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	2015년 (사)아트스페이스 풀 1개처 선정, 2016년 아이공, 스페이스 빔 2개처 선정
	2015년 공연예술행사지원	(재)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원
	2016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6기 단체 지원
	2016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전통예술분야와 연극분야를 제외한 시각예술, 음악, 예술일반 등 분야는 배제없이 지원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한 사례	2015년 작가회의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기부금 재원으로 작가회의 행사 2건 지원
	2016년 민중미술 연구서 발간지원사업	-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2016년 통영국제음악재단 지원	-
	2016년 문예지우수콘텐츠아카이빙 지원대상 선정, 문학순회사업 참여작가 선정, 문학동아리 멘토 작가 선정	지원배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주관처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배제대상 작가 또는 단체 참여 지원
	2015년 국제창작레지던스 기획 파견	작가 ‘한ㅇ’의 노리치작가센터 레지던스 지원을 위해 영국문화원화 협력사업으로 지원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기획 사업	문체부의 배제지시로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30여개 단체를 기획사업에서 선정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주관처 공모사업	다른 공모사업에서 지원배제로 탈락된 단체를 순회사업 주관처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지원한 사례	2015년 공연시장활성화 지원사업(공연티켓 1+1)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단체들을 문체부로 보낼 때 임의로 단체명과 대표자를 변경하여 통보(문체부 담당 사무관과 협의하여 진행)
	2016년 한영공동기금 사전리서치 대표단 파견	문체부에서 선정작가 중 일부 예술인을 허가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파견함.
	2016년 APP Camp 지원	주요 선정예술가가 배제대상으로 있어 선정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2016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반복적으로 배제가 거론되는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심의단계별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의를 하여 4개 단체 지원

4. 징계권고 대상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예술위 비상임 위원>

○ 예술위 소속 비상임 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등에 따라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 위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비상임위원은 예술위원회 직원 등으로 부터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등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행위가 실행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예술

위원회 임직원과 문체부 등 공무원 등에게 그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BBB의 경우

○ BBB은 2012.12.5.부터 2016.3.2.까지 예술위 비상임위원 직위에 있으면서 청와대가 지시하고 문체부가 실행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원배제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심의제도 변경과 공정·공평해야 하는 지원심의에 특정인·단체를 지원배제 하라는 지시 및 예술위 직원으로 하여금 실행토록 한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직무를 방조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더욱이, 위 사람은 TTT 본부장, YYY 부장 등으로부터 2014년 3월 경 책 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심의위원을 선정토록 한 사실, 특히 연극분야는 배제 대상자가 많아 별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특정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와 배제이행을 실행하게끔 지시한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를 용이하게 하게 한 바 직권남용 방조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2) AAA의 경우

○ 비상임위원 AAA는 2015.2.2.부터 2017.6.19.까지 비상임 위원직 직무를 맡으면서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 하거나 중지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 2015년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은 2014년 11월 경 부터 2015년 7월 까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집요한 블랙리스트의 실행 지시로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배제기준이 고안되었으며, 위 사업의 책임심의위원이 배지지시 실행을 거부하자, 당시 ■■■(위원장)이 직권으로 배제대상자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인원을 축소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맞은 사업이었다.

○ 위 사람은 예술위 위원 중 문학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배제 지시 및 사업폐지까지 거론된 상황 등)을 TTT(본부장), YYY(부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2015.5.29.자 제161차 회의록 발언 내용과 그 이후 문건으로 보면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르코창작기금사업의 제3차 책임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청와대와 문체부의 배제지시 대상자가 제외되어 있지 않자, 2015년 7월 경 제3차 심의결과(최종 통과자 120명)안을 거부하고, 당시 ■■■ 위원장이 결정한 지원배제가 반영된 70명(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면결의를 의결함으로서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위 AAA가 블랙리스트 실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람은 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부여한 직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예술위 사무처장>

○ 예술위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사무처),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무처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며 사무처장은 예술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위·감독을 받아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과 위원회 행정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한편, 사무처장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직자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NN의 경우

○ 그러나, NNN은 2012.3.20.부터 2015.3.1.까지 예술위 사무처장 직위에서 정부 초기 청와대와 문체부의 ‘정치적 편향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등 부당한 외압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끔 상급기관의 지시사실을 묵인, 방조하였다.

○ 문체부는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4년 9월 경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들과 회의를 하였으며 예술위 사무처장(NNN)과 본부장들을 세종시로 불러 청와대의 지원배제 방침을 설명하고 이행을 지시하였다. 사무처장 NNN 등은 위 지시방침을 예술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예술위에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한 신청접수내역, 심의위원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4년 12월 경 명단을 송부하자 문체부는 국정원과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배제 대상자를 예술위 본부장 및 부장 등 관계자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2015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중 <2015년 다원 예술창작지원>과 <2015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세부 지원사업에 문체부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을 전달하였고 지원배제 실행을 지시하는 등 NNN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배제를 지시한 사실’을 TTT 본부장 등에게서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도록 승인하였다.

○ 또한, 2014년 4월~9월 경 예술위의 지원심의 제도를 개편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2015년 5월 경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모제도’를 ‘기획사업’ 위주로, 심사제도를 ‘책임심의제도’에서 ‘심의위원 풀(pool)제도’로 전환하는 등 사업개편 계획을 세웠으며, 2015년 가을 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문체부 예술국은 예술위 사무처 직원을 불러 2016년 문예기금 사업 개편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위 NNN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문예기금 공모심사 체계를 변경하고, 심의위원 임명 시 ‘이념 편향 여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문체부로부터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책임심의위원에서 제외할 것’ 등을 지시받은 사실을 알고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다.

(4) 000의 경우

○ 000 또한 2015.8.7.부터 2018.5.22.까지 사무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청와대와 문체부의 ‘정치적 편향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등 부당한 외압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끔 상급기관의 지시사실을 묵인, 방조하였다.

○ 이로 인해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인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사업,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문학행사 및연구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및전시지원사업,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주목할만한작가상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연기획전문인력지원사업, 연수단원지원사업,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등에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전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예술위 본부장>

(5) MMM의 경우

○ MMM는 2014.11.7.부터 2015.11.4.까지 공연예술센터 센터장 직위에서 공연예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배제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이행토록 지시하였으며, 하급자로 하여금 지원배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심의제도 변경을 지시하였고, 심위원회를 회유하고, 정상적으로 선정된 공연을 방해하였으며, 소속 부장의 잘못된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서울연극제 재대관 취소를 위해 권한이 없는 하급자에게 허위자료 작성을 지시하는 등 비록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2015년 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에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 사무관 이○○이 지원사업에 신청한 특정단체들을 지원 배제하라는 지시를 위 MMM는 하급자인 FFF(부장)에게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배제지시 이행을 위하여 위 사업 심의위원 중 3인을, 지원신청 19개 단체 배제지시를 이행을 위하여 최초 추진계획안에 있던 ‘채점제’를 ‘등급제’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장(MMM)과 예술위 위원장의 최종 결정단계를 추가하여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였다.

○ (2) 한국공연예술센터 팝업씨어터 사업으로 선정된 김○(연출가)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수학여행 등 용어)이 있다는 것을 2015.10.17. 문화사업부장 SSS이 확인하고 공연예술센터장 MMM, 운영총괄본부장 LLL과 당일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다음날 10.18. 공연을 방해하였다.

○ (3) 청와대와 문체부의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지시>에 2014.11.7. 하급자 FFF(부장)에게 신청자 및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토록 지시하고, 해당사업의 심사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 또는 설득하여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였으며 또한,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가방침에 ★★★ 위원장의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연운영부장 RRR이 제안한 ‘시설물 고장을 핑계로 재대관 극장 폐쇄 방안’에 동조하는 등 지시를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MMM는 문체부(오○○ 등)에 진행과정을 보고·공유하였고 무대운영부장 QQQ에게 극장 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일자를 당초

제출일자(4.6.)보다 앞선 2015.4.1.로 수정을 지시하고 시설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극장폐쇄의 당위성을 맞추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6) HHH의 경우

○ 위 사람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제교류부장 및 예술진흥본부장을, 그리고 2015.11.23. 조직개편 후에는 문학시각예술본부장을 거치면서 (a)청와대와 문체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정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본인 또는 하급자 부서장들에게 이행을 지시하였으며, (b)지원배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거나 배제논리를 고안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직위에서 (1) 2015년 9월경 ‘주목할 만한 작가상’ 후보자 명단 제출을 하급자에게 지시하였고 지원심의에 앞서 2015.10.8. 지원배제 대상자들이 심의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문학상 수상자 제외 등)을 하급자인 CCC(부장) 등에게 고안하도록 지시하고 2015년 11월 경 심의회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 예술진흥본부장(직무대리) 직위에서 (2) 2016년 2월과 7월 경, 문체부(○○○)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위 HHH에게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요구하고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HHH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심의위원 풀(Pool) 선정 과정에서 배제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배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급자 CCC에게 지시하여 심의위원 배제 대상자를 제외한 안건을 예술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3)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공모사업과 2차 공모사업 진행 시 공모 신

청자 명단을 송부토록 하고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하였다.

○ 국제교류부장 직위에서 (4) 2015년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1·2차 공모사업에 대해 문체부(오○○)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 1차, 2차 공모사업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자 명단을 메일로 송부하고 심의 전 지원배제가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양해를 요청하고, 지원배제 제외 양해가 안된 단체의 배제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심사 전 미리 심의위원을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심의에서는 배제대상 단체의 미비점(초청자 구비 여부 및 초청조건 타당성, 역대 지원현황, 전년도 보조금 정산여부 등)을 제공하고 선정후보로 논의 될 경우 위 내용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였다.

(7) LLL의 경우

○ 위 LLL은 2015.11.23.부터 2016.5.1.까지 예술확산본부 본부장의 직위에서, 2016.2.1.~2016.5.1.까지 문화나눔본부 본부장(겸직)의 직위에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고 특정단체의 배제지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팝업씨어터에 선정된 김○ 연출 <이 아이> 공연을 본 사업담당 부장 SSS이 공연내용이 세월호가 연상된다는 보고를 하였고, 2015.10.17. 저녁 공연센터장 MMM, SSS과 논의하여 다음날 10.18. 공연은 진행하되 본 사업의 취지대로 카페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5.10.18. 공연 당일 SSS의 공연방해 행위(공연 전후 카페 영업을

핑계로 공연행위가 어렵도록 카페 집기를 옮겼고, 공연대사가 들리지 못하도록 카페 음향을 높이거나 야외로 연결된 카페 문 개방 등)를 하였으며 LLL은 SSS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함으로서 공연을 방해하였다. SSS의 공연방해는 예술위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마땅히 제지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 하였다. 더불어, SSS이 <이 아이>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문제제기에 2015.10.17. 회의에서 공연 취소 또는 방해를 논의하였다는 당시 관계 직원의 진술과 10.18. SSS이 실제 공연을 방해한 사실로 보아 모의(謀議)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문체부 사무관 김○○은 청와대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문화복지부가 담당하던 <(복권)농산 어촌순화사업>, <(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2015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사업>에 대해 2014년 11월 경 LLL(본부장), PPP(부장)에게 지원 신청자 명단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4년 12월 초 문체부(김○○)는 지원할 수 없는 단체 명단을 전화로 통보하여 지원배제 이행을 지시하였다. LLL과 PPP는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항의를 하였으나, 문체부 조차도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 위원장, NNN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인되었다. 2014년 12월 중순 위 사업 심의회의에서 지원배제 단체 중 선정 될 가능성이 높은 단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문체부의 배제 지시 등 지원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8) TTT의 경우

○ TTT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와 문체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정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본인 또는 하급자 부서장들에게 이행을 지시하였으며, 지원배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배제지시 대상자가 탈락되는 등 지시를 이행하였다.

○ (1)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은 위 TTT, YYY에게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4년 12월 경 명단을 송부하자 오○○은 국정원과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배제 대상자를 TTT, YYY 등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TTT과 YYY이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대본공모 사업>,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우수작품제작공연 지원사업>,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 공모사업에 지원배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부방침을 전달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선정건수 자체를 축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특정예술인·단체가 탈락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또한, (2) 문체부(오○○ 등)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예술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을 위하여 2014년 3월 경 TTT에게 책임심 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명단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을 통해 모○○, ●●●에게 보고되고, 교문수석 모○○ → 문체비서관 김○○ → 신○○ → 선임행정관 용○○ → 오○○으로 이어지는 전달과정을 통해 TTT, YYY에게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책임심

의위원 배제 대상자를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TTT 과 YYY은 예술위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제대상이 제외된 2014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예술위원장 과 예술위 위원들에게 배제지시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 한편, TTT은 예술위원회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견책)을 받고 예술진흥본부 본부장에서 창의예술인력센터 센터장(부장급)으로 인사 조치되었다. 그러나, 창의예술인력센터장(2015.8.24.~현재)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청와대와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있었으며, TTT은 창의예술인력센터가 담당하던 2016년도 <공연연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토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였고 심의위원에게 ‘정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TTT은 예술진흥본부장 직위에서 2015.11.11. 예술위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징계처분의 사유와 다른 새로운 위반행위가 2016년에 발견되어 새로운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다만, 예술위원회 모든 사업에 대한 배제지시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사무처장, 예술위원장, 예술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인되었던 상황이었다.

(9) RRR의 경우

○ 위 사람의 2015.3.23.~15.8.23.까지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운영부 부장으로, 2015.8.24.~2016.5.1.까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을, 2016.5.2.~2017.3.2.까지 공연예술본부장 직위에서 비롯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극장 폐쇄 과정에서 배제방안을 마련하였고, 문체부에

상황과 대안을 보고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또한, 경영전략본부장 직위에서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공연예술센터 공연운영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청와대의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불허 방침에 문체부와 예술위는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극장의 상부장치 ‘구동부 장치 파손’이 발생하자, RRR은 2015.3.30.~3.31. 경 “QQQ을 통해 들은 안전점검결과 내용을 듣고, 구동부 장치 이상을 명분으로 서울연극제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센터장 MMM에게 말하고, 위 내용이 문체부 오○○에게 전달되었다. 그 후, RRR이 오○○에서 보낸 2015.3.31.자 메일 내용을 보면 “서울연극제 개막일 4.4.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등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극장 폐쇄 결정은 4.6 예정”이라고 보고하는 등 당시 문체부의 지시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공연운영부장 RRR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RRR이 문체부(오○○)에게 보낸 2015.4.5.자 메일에서 “극장 폐쇄는 예술위 ★★★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이지만 위원장님이 판단했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을 수용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전 관련 사항 언론창구는 QQQ 무대예술부장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은 ★★★ 위원장의 책임을 하급자(QQQ)에게 전가하는 행위라 판단된다.

○ (2) RRR은 경영전략본부장 직무에서 2016.5.2.자로 공연예술지원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2017.3.2.까지 해당직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년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에서 “예술위 사업담당 부장 WWW,

본부장 RRR은 문체부로부터 배제지시를 받은 사실을 숨긴채 해당 신청자에게 지원하기 힘든 부분을 언급하거나 심의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비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였다(●●● 외 3명 1심 판결내용)”

○ 또한, (3)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공모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 책임자로 심의에 개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공립기관 종사자를 심의위원으로 섭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지원배제를 이행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10) III의 경우

○ III은 2015.11.23.부터 2016.5.1.까지 공연예술본부 본부장의 직위에서 비록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a)문체부에 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b)심의위원회에게 문체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탈락을 유도하여 배제지시를 이행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2016년 1월 경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인○○ 사무관은 <2016년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사업> 담당부장 DDD에게 전화로 신청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배제대상 명단을 DDD에게 통보하며 이행을 지시하였다. DDD은 상급자인 III(본부장)에게 보고 하였고, III은 사무처장(OOO), 예술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DDD으로 하여금 신청자 명단 제출 지시하였다. 배제대상자 명단이 문체부로부터 전달되자 DDD에게 이행을 지시하고 2016.2.1.과 2.5.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배제 대상자가 선정후보로 거론되는 경우에 선정에 불리한 특이사항(특이사항은 실무자들이 신청단체의 과거 이력사항을 확인 참고사항으로 기재됨)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이행하였

다.

○ 또한, (2) 2016년 1월, 2월 경 문체부(인○○, 오○○)은 지원배제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위하여 공연지원부 ZZ부장에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과 <연극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하면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 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ZZ은 문체부의 지시를 상급자인 위 III(본부장)에게 구두 보고하였고 위 두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송부토록 지시하고, 지원심의 과정에서 문체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 탈락을 종용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다만, 위 사람은 문체부의 지시가 청와대 하명(下命)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부장(III)과 부장(ZZ)이 “소위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원배제 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5개 단체를 지원배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양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예술위 부장>

(11) CCC의 경우

○ CCC는 2015.11.23.부터 2017.3.2.까지 문학지원부 부장의 직위에서 (a) 블랙리스트 이행을 위한 심의기준을 고안하고 (b)문체부에 심의위원 및 심의단계별 통과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c)지원배제 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는 등 비록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2016년 2월과 7월 경 상급자 HHH(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2016년도 심의위원 풀(POOL)에서 문체부의 배제 대상자를 제외하여 안건을 예술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고, (2) 2015년 주목할 만한 작가상' 공모사업에서 문체부(오○○) 지시에 의하여 2015.10.8. 지원배제 대상자(작가)들이 심의에서 불리한 새로운 심사기준(문학상 수상자 제외 등)을 강구하고 2015년 11월 경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 (3) 2014년 11월 경, 문체부(오○○)은 청와대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CCC(부장)에게 심의위원 후보자 및 지원사업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CCC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과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2014년 11월~12월 경 송부하였으며 배제 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고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 다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CCC에 대하여 “2018.1.25. 진상조사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업의 블랙리스트 실행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2) DDD의 경우

○ 위 사람은 2015.11.23.부터 2016.12.18.까지 극장운영부 부장의 직위에서 문체부의 신청자 명단 제출 요구가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b)최종 배제대상 명단을 받아 이행을 위하여 실무자에게 단체의 불리한 사항을 정리토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여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문체부 사무관 인○○의 요구에 따라 DDD(부장)은 2016년 2월 경 <2016년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인○○은 명단을 검토 후 최종 배제 대상자 명단을 DDD에게 보내면서 특정 예술단체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DDD은 상급자 III(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문체부(인○○)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에게 배제 대상자(단체)들이 선정에 있어서 불리한 특이사항(과거 이력사항 등)을 실무자에게 정리토록 지시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실행하였다.

(13) EEE의 경우

○ 2014.1.17.부터 2016.9.11.까지 감사부장의 직위에서 ‘201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의하여 지원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결과를 축소,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예술위 감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의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인 기관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하는데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성을 법률로 정하여 두고 있다.

○ 그러나, EEE은 2015년 국정감사(2015.9.18., 교문위)에서 “연극 창작산실-우수작품제작지원에서 박○○ 연출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작품 배제”와 관련하여 문예기금사업 지원심의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2015.9.23.~10.29. 실시감사 과정에서 TTT(본부장), YYY(부장)의 진술을 통해 위 사건 등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강한 배제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사건 당시 ★★★ 위원장의 지시로 박근형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 등을 파악하였음에도 후임 ■■■(위원장)과 OOO(사무처장)과 상의 후 국정감사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TTT, YYY의 개인적인 돌출행동’이라는 국정감사 위증과 동일하게 2015.11.11. 감사결과를 축소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TTT(본부장), YYY(부장)을 징계처분 하였다.

○ 위 사람은 감사부장으로써 예술위원회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법령과 규정이 정한 의무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예술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감사의 독립 원칙)제2호에 따라 상급자인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기관 또는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감사부장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14) FFF의 경우

○ 위 사람은 2014.5.29.부터 2015.3.22.까지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운영부

부장으로, 2015.11.23.부터 2017.3.2.까지 순회사업부 부장의 직위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a)문체부가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제출을 지시한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며 (b)배제지시 이행을 위한 심의계획을 고안하고 (c)지원심의과정에서 배제 대상단체에 불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2016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에서 문체부(최○○) 지시에 따라 신청자 명단 및 1·2차 각 단계별 통과자 명단을 2016. 1월 경 송부하였고,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심의계획 일정을 이전과 달리 1차와 2차로 진행하는 방식과 심사방식을 채점제가 아닌 추천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배제논리를 고안하였으며, 최종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2차 심의에 간사로 배석하여 배제 대상자가 선정 후보로 논의되는 경우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 등 불리한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락을 유도하여 지원배제를 실행하였다.

○ (2) 2015년도 공여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에서는 신청자 명단과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2014. 10월 경 송부하고, 심의위원 중 3인과 신청단체 19개처에 대한 배제지시 이행을 위하여 당초 추진계획안에 없던 ‘채점제’를 ‘등급제’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장과 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심의결정에 최종 결정단계로 추가하여 지원배제 지시를 실행하였다.

○ (3)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임○○, 사무관 이○○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2015년 정기대관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를 지시하고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대상자(극단 완자무니, 서울연극협회 등)를 탈락시키도록 공연 예술센터장 MMM에게 지시하였으며 MMM와 공연운영부 부장 FFF은 당시 ★★★ 위원장에게 보고하였고 2014.10.23.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와 2014.11.3.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 지시에 따라 MMM와 FFF은 2014.11.7. 공모사업 신청자 및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하고, 해당사업의 심사위원회에 지원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 또는 설득하여 지원배제가 실행되었다. 다만,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합의 후 재대관 불가 방침에 따라 극장 폐쇄하는 과정에서 위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다.

(15) GGG의 경우

○ 2015.11.23.부터 2017.3.2.까지 기획조정부 부장의 직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한 ‘2015년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검열 의혹’에 대한 조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 ‘2015년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의혹’ 사건은 한국공연예술센터의 팝업씨어터 사업으로 선정된 김○(연출가)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수학여행 등 용어)이 있다는 것을 2015.10.17. 문화사업부장 SSS이 확인하고 공연예술센터장 MMM, 운영총괄본부장 LLL과 당일 대책회의를 하고 다음날 10.18. 공연을 방해 하였으며 이후 공연 2건의 대본을 요청하는 등 사전 검열을 하려고 한 사건이다.

○ 위 사건 조사는 당시 경영인사부장 CCC가 2015.11.6.~11.10. 동안 MMM 등 9명의 피조사자들을 직접 문답을 통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징계대상자인 GGG은 CCC의 인사발령(2015.11.22 면직)으로 임명된 기획

조정부장(2015.11.23, 조직개편)으로 전임자 CCC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조사자 중 3인(MMM, SSS, XXX)에 대하여 주의서를 발부하였다.

○ 당시 기획조정부서는 인사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부서장 GGG은 전임 부서장이 행한 조사를 정리하여 보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GGG은 전임자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2015.12.31. 조사를 완료(팝업씨어터 관련 조사결과 보고)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건이 축소되어 보고되었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를 통해 판단해 보면, 조사자인 CCC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공연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한 GGG은 “당시 예술위원회를 둘러싼 상황 (□□□ 위원장 재직,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예술검열 등)으로 공연방해 및 취소요구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점을 보아 업무인계를 받은 GGG은 당시 추가 조사 또는 자체감사를 청구하여 명확히 사건을 조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16) JJJ의 경우

○ 위 JJJ은 2015.11.23.부터 2016.8.23.까지 예술인력개발원 원장의 직위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a)문체부에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b)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JJJ은 2015년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및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서 2015년 2월~4월 경, 문체부 김○○ 사무관의 지시(청와대(김○

○ 행정관이 김○○에게 전화로 꼼꼼하게 확인하라는)에 따라 위 두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2015년 4월 송부하였으며, 2015년 5월~6월 심사위원에게 청와대의 배제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사업이 전면 폐지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모든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등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JJJ은 (2) 2015년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이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배제 지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에 “문체부가 모든 사업은 신청자 명단 선 제출, 검토 후 심의진행을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여 공모 신청접수 결과를 문체부로 보고하지 않고 1차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2015년 2월~4월경 문체부 오○○ 사무관은 매우 화를 내며 “모든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심의는 사전에 문체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심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위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지시 받았다. JJJ은 1차 심의결과를 번복 할 수 없어 전체 신청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1차 심의로 선정된 명단만을 문체부 김○○(사무관)에게 송부하였다. 1차 심의 통과자 명단 제출 후 문체부로부터 배제 대상자 3명이 통보되었으며, 2015.4.22.~4.23. 2차 심의회의에서 그 중 2명이 지원결정이 확실시되자 심의위원들에게 청와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 다만, 위 사람은 예술위 제162차 전체회의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예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이야기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2015년 차세대 예술인력육성사업과 같이 문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또한, © 배제지시 이행에 있어 별도의 방안 등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당시 심의위원 진술에 의하며 심사위원에게 지원배제 사실을 전달하는 등 위계(僞計)하지 않고, 정부의 지시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폐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17) KKK의 경우

○ KKK은 2015.8.24.부터 2015.11.22.까지 창작지원부 부장의 직위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a)블랙리스트 이행을 위한 논리를 고안토록 실무자에게 지시하였고 (b)지원심의에 배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배제단체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1)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에서 위 KKK은 2015.8.24.부로 창작지원부장으로 임명 되었으며, 2015년 9월 경 사업 담당자의 업무보고를 통해 문체부 오○○ 사무관 지시 의하여 지원신청자 명단을 발송한 사실과 문체부의 배제대상자 통보가 오지 않아 심의결과 발표가 1개월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지원배제 명단 통보 등을 보고 받았으며, 2015년 10월초 문체부 (오○○)으로 부터 최종 배제 대상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2015년 10월 초 실무자에게 배제 논리를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KKK은 상급자인 HHH 본부장(직무대리)과 함께 2015.10.15.~2015.10.19. 심의회의에 배석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단체)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체부의 양해를 얻지 못한 ‘극단 허리’ 등 22개 단체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 (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지원사업에서는 문체부가 관리하던 지원배제 명단에 등록된 자는 극단미인(김○○)을 포함 21명 이

였으며 그 중 총 3명이 지원배제 되었다. 이전 사업담당 부장인 YYY은 2015.8.24.부로 인사이동 되었으며,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배제대상 명단은 사업담당자를 통해 후임 부장 KKK에 전달되었고 KKK은 2차 심의에서 배제지시가 이행하였음을 진상조사위에서 인정하였다.

○ 진상조사위에서 KKK의 비위행위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차세대예술 인력육성사업(문학) 심사위원 후보 김○○ 선정 배제>(사건번호 : 2017특21)를 적시하였으나, 검토 결과 이 사건은 2015년 6월 경 발생하였으며 2015.8.24. 창작지원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KKK의 개입 여부는 심사위원 배제 명단의 전달과정과 발령일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KKK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자이다.

(18) PPP의 경우

○ PPP는 2014.1.10.부터 2015.8.23.까지 문화복지부 부장의 직위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이나 (a)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b) 배제지시를 이행하는 등 예술위 윤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 사무관은 2014년 11월 말 경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신청자 명단 제출을 지시하였고 PPP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2014년 12월 문체부(김○○)로부터 지원배제 대상자를 전화로 전달 받으면서 선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 PPP가 이에 대한 부당한 함을 지적하자 문체부(김○○)는 “배제대상이 선정 될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 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PPP는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LLL(본부장), NNN(사무처장), ★★★ 예술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1차 심의

(2014.12.18.~12.19.)에서는 배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2·3차 통합심의(2014.12.22)에서 배제대상 단체가 선정후보로 거론되면 LLL 본부장과 함께 심의위원들에게 “정치적이 문제 등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외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이행하였다.

(19) QQQ의 경우

○ <2015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사업은 예술위 공연예술센터 공모사업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명단이 문체부를 통해 지원배제 지시가 하달되었으며 위 사업 신청단체 중 서울연극협회 등 총 19개 단체가 지원배제 대상이었다. 그 중 청와대의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불허 방침에 예술위원회는 곤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서울연극협회에 대관해 주기로 약속한 아르코대극장 상부시설 중 구동부 장치가 2015.3.10. 파손을 되었으며, ★★★ 위원장은 2015.4.2. 문체부 장관과 면담 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극장 ‘구동부 장치 파손’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극장 폐쇄를 지시하고, 공연예술센터장 MMM는 위와 같은 지시를 무대예술부장 QQQ에게 지시하여 2015.4.3. 극장을 폐쇄하였다.

○ QQQ은 2015.2.2.부터 2017.3.2.까지 공연예술센터 무대예술부 부장으로 극장시설 관리 및 공연연출을 총괄해야 하는 자로 서울연극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연극제> 이전 공연을 진행하던 중 2015.3.10. 구동부 고장을 처음 발견하여 MMM(센터장)에게 보고하였고, 2015.3.17. 국산 모터로 교체하여 2015.3.29.까지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종료 후 2015.3.30.~3.31. 이틀간 관리업체 (주)세원SDS를 통해 외국산 모터를 교체하고 정기점검을 하였다.

○ 당시 청와대의 서울연극협회 재대관 불허 방침에 문체부와 예술위원회는

곤란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구동부 장치 파손’이 발생하자, 공연운영 부장 RRR은 3.30.~3.31. 경 “QQQ을 통해 들은 안전점검결과 내용을 듣고, 구동부 장치 이상을 명분으로 서울연극제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MMM에게 말하고, 위 내용이 문체부 오○○에게 전달되었다.

○ 아르코대극장 구동부 고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는 위 QQQ 이지만, 공연운영 여부 결정권은 ★★★ 예술위원장, MMM 센터장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직무권한과 책임 측면에서 QQQ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 우연치 않게 발생한 시설물 고장을 명분으로 다시 배재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실행한 RRR, MMM와 그 결정을 한 ★★★이 책임이 더 무겁다 할 수 있다.

○ 다만, 위 QQQ은 서울연극제에 대한 청와대 및 문체부의 대관 불허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서울연극제 앞서 진행된 공연에서 파손된 장치를 교체하는 등 대체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한 사실과 (주)세원SDS의 점검 후 안전진단보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급자(MMM)의 지시였으나 안전진단보고서 제출날짜를 당초 제출일자(4.6.)보다 앞선 2015.4.1.로 명기하여 제출토록 한 행위는 극장폐쇄의 당위성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아니 하였다.

(20) SSS의 경우

○ 위 사람의 2015.3.23.부터 2015.11.4.까지 공연예술센터 문화사업부 부장의 직위로, 2015.12.24.부터 2017.7.9.까지 국제교류부 부장 직위에서 (a) 청와대와 문체부의 부당한 외압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신청자명단을

송부하였고, (b) 그 결과 배제지시를 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술위원리지침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으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다.

○ 한편,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및 후속공연 검열 행위는 사업실무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진술,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SSS이 사업실무자와 통화한 메시지(카카오톡) “내가 방해한 것 가지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아이>공연은 지원배제 대상은 아니었으나 당시 예술위원회가 청와대와 문체부의 강한 외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담당부장으로서는 사전 예방(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하고자 한 잘못된 선택에 의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윤리지침 제6조에 규정을 위반하였다.

○ SSS은 국제교류부장 직위에서 (1)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공모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2016년 4월 경 문체부 오○○ 사무관에게 송부하였고, 2016.5.20. 1차 심의에, 2015.6월 진행된 2차 심의에 배석하여 ‘극단 드림플레이’ 포함 8건을 지원배제 이행을 하였다. 단, 진상조사위에서 SSS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사건으로 적시한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1차)에서의 위반행위인 2015.12월 경 문체부로 전달된 신청자 명단의 발송한 주체는 SSS이 아니고 문학시각예술본부장 HHH가 전달하여 SSS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자로 확인된다.

○ (2) 공연예술센터 문화사업부장 직위에서는 팝업씨어터에 선정된 김○ 연출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수학여행, 노스페이스,

곡소리 등)이라 판단하고, 공연예술센터 센터장 MMM, 운영총괄본부장 LLL과 당일 저녁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결과 다음날(10.18) 공연은 진행하되 본 사업의 취지대로 카페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5.10.18. 공연 전·후로 위 SSS은 카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으로 공연을 위해 옮겨 놓은 카페 집기를 원 자리로 다시 옮기는 등 공연을 진행하기 어렵게 하였으며(이 과정에서 공연단체와 말다툼 발생), 공연 중에는 공연 대사가 들리지 못하도록 카페 음향을 높이거나 야외로 연결된 카페 문 개방 등 행위를 함으로서 공연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 아이> 공연 후, 후속공연 2개 작품의 대본을 공연단체(송○○, 윤○○ 연출가)에 요구하였는데, <이 아이> 공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요구로 당시 실무자가 ■■■ 위원장에게 보낸 자술서에 의하면 위 SSS은 “차기 공연 대본을 검토하여 공연취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고 <이 아이> 공연방해와 그 사유(당시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 청와대의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배제지시가 실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연대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21) YYY의 경우

○ YYY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창작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와 문체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정예술인·단체를 지원배제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a)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b)지원배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부방침을 전달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건수 자체를 축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b)그 결과 특정예술인·단체가 탈락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1)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은 YYY과 TTT(본부장)에게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4년 12월 경 명단을 송부하자 오○○은 국정원과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배제 대상자를 TTT, YYY 등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TTT과 YYY이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대본공모 사업>,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우수작품제작공연 지원사업>,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에서 지원배제 이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정부방침을 전달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선정건수 자체를 축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특정예술인·단체가 탈락되는 등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다.

○ 또한, (2) 문체부(오○○ 등)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예술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을 위하여 2014년 3월 경 예술위 TTT(본부장)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명단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을 통해 모○○, ●●●에게 보고되고, 교문수석 모○○ → 문체비서관 김○○ → 신○○ → 선임행정관 용○○ → 오○○으로 이어지는 전달과정을 통해 예술위 TTT, YYY에게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책임심의위원 배제 대상자를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배제지시를 받은 TTT(본부장)과 YYY(부장)은 예술위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배제대상이 제외된 2014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예술위원장과 예술위 위원들에게 배제지시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 한편, 예술위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지시’사건이 불거지자, 2015년 1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YYY을 징계처분 하였다. 자체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YYY, TTT은 진술하였으나 감사결과가 축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청와대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감사를 종결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루어진 선행 감사처분은 YYY, TTT의 여러 위반행위를 포괄한 징계처분이며 위 YYY은 2015.8.24. 인사발령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가 종료되어 비록 진상조사위에서 징계를 권고하였으나 선행처분과 동일 혐의사실인 바 징계사유가 종결되었다.

(22) ZZ의 경우

○ 위 사람의 2015.11.23.부터 2016.5.1.까지 예술진흥본부 공연지원부장 직위에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과 <연극창작산실(일반)> 두 지원사업 신청자 중 지원배제 대상자가 있는 지를 확인을 위한 문체부 부당한 지시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 탈락을 종용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인○○은 2016.1.15. 경, 정 철(부장)에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일반공모)>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하면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ZZ은 위 지시를 III(본부장), OOO(사무처장)에게 보고하였다. ZZ은 신청자 명단(개인정보 포함)을 인○○에 송부하였고, 2016년 2월 경 심의 회의에서 문체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배제 대상자(단체)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이행하였다.

○ 또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오○○은 2016년 2월 경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에 대해 신청자 명단을 송부를 지시하고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각 지시하였으며 정 철은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2016년 3월 경 문체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 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단체) 탈락 종용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다.

○ 다만, 위 사람은 문체부의 지시를 본부장 III에게 보고하고, III은 사무처장 000에게 보고가 되었으며 심의과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예술위 규정위반이며 문체부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이의제기 하였으며 사무처장(000), 부장(III)도 같은 의견이었으나, 문체부의 지시가 청와대 하명(下命)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급기기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부장(III)과 부장(ZZ)이 “소위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3) WWW의 경우

○ WWW는 2016.5.2. 공연지원부 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6년 음악 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공연전통 예술과 인○○ 사무관은 청와대의 하달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를 위하여 위 사업에 지원한 신청자 명단을 WWW에게 송부토록 지시하였으며, WWW는 2016.7월~8월 경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6년 8월 경 심의일정 직전 문체부(인○○)은 지원배제 대상단체를 유선전화로 통보하였으나, WWW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지고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본인을 포함 예술위원회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던 상황으로 문체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 전체 신청 사업들을

대상으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규정상 결격사유(전년도 보조금 미정산 단체)나 필수서류 미미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심의준비를 하고 심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배제대상자(음악감독 한상일)을 위촉하였고 심의결과 배제대상이었던 안산시립교향악단이 선정되는 등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 그러나, ‘●●● 외 3명 1심 판결’에 의하면 “예술위 담당 직원 WWW, RRR은 문체부로부터 배제지시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신청자에게 지원하기 힘든 부분을 언급하거나 심의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비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배제지시를 실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문체부가 예술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상급기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 본 사건 이전 배제단체가 선정되어 “문체부 담당 사무관의 질책과 ■■■ 위원장의 대면호통 등을 장기간 당하여 자료 제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등 종합하여 보았을 때 WWW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징계의 양정 사항

○ 상임감사(김선출)는 감사자문위원(3명)인 신광조(前 감사원 공무원), 임두택 (現 인사혁신처 인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임선숙(現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검토보고서’와 ‘징계권고 대상자별 처분요구서’를 2018.10.8.~10.10.까지 사전 검토를 마치고 10.11. 감사자문회의를 통해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였다.

○ 감사자문위원 모두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계획 하에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문체부 공무원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다수가 연류된 것에 안타까운 심경을 공유하였으며, 이전 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 직권을 남용하여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국정원과 문체부를 동원하여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심사 등에 개입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훼손하였으며 예술위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를 저해하였다고 전제하였다.

○ 이에, 처분요구서에서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1)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따른 행위임으로 예술위 임직원 모두 ‘고의성’은 없으나 그 결과의 과실은 중(重)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 행위자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개입 정도와 (3) 조직 구성원은 ‘권한에 맞는 책임’을 갖는 바 행위자의 당시 직위를 살펴 징계양정을 부여하였다.

○ 감사자문위원 일동은 예술위 임직원 모두가 본인 의사에 반하였고, 자유의지가 속박 당한 행위이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사태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으며, 사적기금이 아닌 공공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예술위의 권위와 위상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예술위 구성원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 비록, 청와대와 문체부의 직권남용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임직원은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임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예술위원회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정치적 성향에 따른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공모사업 등에서 탈락 시키도록 지시를 받은 관련자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주의)

더불어, 예술위 비상임 위원 및 퇴사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구분	성명	현 직위	처분요구	비고
위원 (2명)	AAA	-	통보(인사통보)	해촉
	BBB	-	통보(인사통보)	해촉
사무처 (21명)	CCC	문학나눔본부장	경징계(견책)	-
	DDD	전문위원	경징계(견책)	-
	EEE	전문위원	중장계(정직)	-
	FFF	전문위원	경징계(견책)	-
	GGG	순회사업부장	경징계(견책)	-
	HHH	휴직	중장계(정직)	-
	III	공연예술본부장	경징계(감봉)	-
	JJJ	경영전략본부장	엄정 주의	시효 종료
	KKK	협력개발부장	경징계(견책)	-
	LLL	전문위원	경징계(감봉)	-
	MMM	-	통보(인사통보)	퇴사
	NNN	-	통보(인사통보)	퇴사
	OOO	-	통보(인사통보)	퇴사
	PPP	휴직	엄정 주의	시효 종료
	QQQ	전문위원	엄정 주의	시효 종료
	RRR	성과평가부장	중장계(정직)	-
	TTT	창의예술인력센터장	중장계(정직)	-
	SSS	휴직	중장계(정직)	-
	YYY	문화올림픽TF팀장	선행처분 완료	2015.11월
	정 철	-	통보(인사통보)	퇴사
	WWW	공연지원부장	경징계(견책)	

V. 개별 처분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사항

※ 징계권고 대상자 징계의결요구서 및 처분요구서(별첨) 참조

- 붙임 1. 징계양정의 기준
2.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권고 대상자 위반행위 일람표
 3. 책임규명 권고안 사건별 관련자 및 배제지시 전달과정
 4.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내용(별첨)

<붙임 2>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권고 대상자 위반행위 일람표

연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1	CCC	(2017문11) 김형중 등 심의위원 풀 부당 배제	2016.2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풀(POOL)에서 배제 대상자를 제외하여 안건을 예술 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문3) 2015년 주목할 만한 작가상' 사업에서 김성규 등 부당 배제	2015.10월 경 2015.10.8. 2015.11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0월 '주목할 만한 작가상' 후보자 명단 송부 ■ 2015.10.8. 배제 대상자들이 불리한 새로운 심사기준 강구 ■ 2015년 11월 경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배제지시 이행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2014. 11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과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2014년 11월~12월 경 송부하였으며 배제 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고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 부당한 지시를 이행 	
2	DDD	(2017공4) 2016년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사업 '극단 놀땅' 선정 배제	2016.2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에게 배제 대상자(단체)들이 선정에 있어서 불리한 특이 사항을 정리토록 지시하고, ■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실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8) 2016년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사업 '극단 허리' 선정 배제			
3	EEE	(2017직공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201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하여 축소,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규정 제11조(의무와 책임) 감사규정 제17조(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4	FFF	(2017공1) 2016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극단 진일보' 선정 배제	2016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명단 및 1,2차 각 단계별 통과자 명단 송부 ■ 심의계획 일정을 이전과 달리 1,2차로 진행하는 방식과 심사방식을 채점제가 아닌 추천제로 수립하는 등 배제논리 고안 ■ 심의위원에게 불리한 내용 제시 등을 통해 지원배제 실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21) 정기대관 공모사업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2014. 10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명단과 각 단계별 통과자 명단 2014. 10월 경 송부 ■ 당초 계획에 없던 채점제'를 '등급제'로 변경하고 센터장과 예술위원장을 심의결정 최종단계에 추가 하는 등 배제방안 고안 ■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 	
		(2017직공1)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2014.11.7 2014.11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7. 공모사업 신청자 및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 ■ 심사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 부각 또는 설득하여 지원배제를 실행 	
5	GGG	(2017공32) 2015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및 검열의혹	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부서장이 행한 조사를 정리하여 보고 하였으나 전임자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 2015.12.31. 조사를 서둘러 완료하여 사건을 축소, 보고함.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6	HHH	(2017문3) '2015년 주목할 만한 작가상' 사업에서 김성규 등 부당 배제	2015.9월 경 2015.10.8. 2015.11월 경	<p><문학시각예술본부장 직위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상 후보자 명단을 2015.12.7. 송부 ■ 2015.10.8. 지원배제 대상자들이 심의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하급자인에게 고안하도록 지시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연 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2017문11) “김형중 등 심의위원 풀 부당 배제”	2016.2월 경 2016.7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1월 경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서 지시 이행 <예술진흥본부장(직무대리)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2월과 7월 경, 심의위원 풀(POOL) 선정 과정에서 배제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배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 심사위원 배제 대상자를 제외한 안전을 예술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시 이행 	
		(2017공24)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연극) 대본공모 지원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2015.10.6. ~11.19.	<예술진흥본부장(직무대리)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2015.10.6.~11.4.)와 2차 심의(2015.11.19.)에서 배제지시 이행 	
		(2017공8)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극단 허리’ 선정 배제	2015.10월 초 2015.10.15. ~2015.10.19.	<예술진흥본부장(직무대리)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0월 초 실무자에게 배제논리를 강구토록 지시 2015.10.15.~2015.10.19. 심의에 배석하여 지원배제 대상자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이행 	
		(2017전3)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등 ‘화성 열린 문화터’ 선정 배제	2015.12.11.	<예술진흥본부장과 국제교류부장 겸직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2.11. 경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2017공15)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2016.5.20. 2015.6월 경	<예술진흥본부장과 국제교류부장 겸직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2016.5.20.), 2차 심의(2015.6월 경)에서 심의위원에게 배제 대상자의 미비점이나 특기사항 등 불리한 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실행 	
		(2017공18) 2015년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1,2차 공모) ‘서울연극협회’ 선정 배제	2015.3월 경 2015.6월 경	<국제교류부장 직위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11월~12월, 2015년 3월 경 1차, 2차 신청자 명단 송부 1차, 2차 공모사업 심의에서 배제대상 단체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이행 - 1차 사업(2015년 1월~3월 경), 2차 사업(2015년 5월~6월 경) 	
		7	III	(2017공8) 2016년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극단 허리’ 선정 배제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중 ‘공연예술행사지원’, ‘연극창작산실(일반) 시범공연 지원배제	2016.1월~2월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일반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1.15. 경 신청자 명단 송부하고 2016.2월 경 심의위원에게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 <연극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2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2016.2월 경 심의위원에게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 	
8	JJJ	(2017공28) 2015년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및 무대 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서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2015.5.22. 2015.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명단을 2015년 4월 송부 2015.5월~6월 심사위원에게 문체부 배제지시를 직접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지시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6)	2015.2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2월~4월 경, 1차 심의에 선정된 명단을 송부 	

연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2015년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극단 하땅세’ 배제	2015.4.22~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4.22.~4.23. 2차 심의에서 문체부 배제지시 사실을 전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배제 지시를 이행 	
9	KKK	(2017공8)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극단 허리’ 선정 배제	2015.10.15.~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0월 초 실무자에게 배제 논리를 강구토록 지시 2015.10.15.~2015.10.19. 심의에 배석하여 지원배제 대상자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지시를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협의를 추가 (2017공24)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지원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2015.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 YYY 부장이 2015.8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배제대상 명단은 사업담당자를 통해 후임 부장 KKK에 전달되었으며, KKK은 2015.11.19. 2차 심의에서 배제지시 이행 	
		(2017특21)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문학) 심사위원 후보 김중미 선정 배제	2015.6월 경 (협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6월 경 사건으로, 2015.8.24. 창작지원부장으로 임명됨 배제명단의 전달과정과 발령일자 등을 고려해 볼 때 KKK은 배제지시를 이행 할 수 없어 위반행위 협의가 없음. 	
10	LLL	(2017공32) 2015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및 검열의혹	2015.10.17.~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센터 SSS이 <이 아이>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문제제기에 2015.10.17. 회의에서 공연 취소 또는 방해를 논의하였다는 당시 관계 직원의 진술과 10.18. 임주연이 실제 공연을 방해한 사실로 보아 모의(謀議)한 사실이 인정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직공7)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관련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	2014.1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12월 중순 심의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문체부의 배제 지시 등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 이행 	
11	AAA	(2017직문1)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2014.12월 ~ 201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처 직원을 통해 청와대와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제3차 심의결과를 거부하고 배제지시가 반영된 지원결정안을 서면결의 방식을 통하여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 지시 이행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 (청렴의무 준수와 책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2	MMM	(2017공21) 2015년 정기대관 공모사업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20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급자에게 배제지시 이행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토록 지시를 하고 배제지시를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32) 2015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및 검열의혹	2015.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이유로 2015.10.17. 문화사업부장, 운영총괄본부장과 대책회의를 하고 다음날 10.18. 공연을 방해 	
		(2017직공1)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2014.11.7.~201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11.7. 신청자 및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 심사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 또는 설득하여 지원배제가 실행 2015.4.3. 청와대의 재대관 불가방침에 극장 시설물 파손으로 안전 문제를 명분을 내세워 극장 폐쇄하여 지시를 이행 문체부에 진행경과를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권한이 없는 무대 예술부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 	
13	NNN	(2017직공7)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	2013.11월 ~ 201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와대(●●●)과 국정원이 지역문화재단이 좌편향 예술인들의 거점으로 보고 문체부에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NNN(사무처장)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연 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편과 관련 '지역문화예술실태조사' 사건		은 거부하였으나 문체부의 강한 요청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2013.11월 ~ 201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문예기금 공모심사 체계를 변경하고, 심의위원 임명 시 '이념 편향 여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문체부로부터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책임심의위원에서 제외할 것 등을 지시받은 사실을 알고 보고 받았음에도 묵인하고 방조 		
	(2017공35)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 변방연극제' 선정 배제	2013.11월 ~ 201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문체부가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배제를 지시한 사실을 본부장 등 직원들에게서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도록 승인 		
14	OOO	(2017공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극단 하땅세' 배제	2016.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예술단체의 배제를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심의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배제명단을 전달하고 심의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여 실행한 사실을 담당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8)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극단 허리' 선정 배제	2016.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가 특정예술인단체의 배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심의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배제 명단을 전달하고 심의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실행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 		
	(2017공8/2017공4 병합) 극단 허리 선정 배제 / 2016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극단 놀땅 선정 배제	2016.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배제 대상자에 대하여 선정에 불리한 특이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제를 실행토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 		
	(2017직공1)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2015.4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와 문체부의 서울연극협회 대관 배제지시 및 재대관 협의 후에도 청와대의 대관불허 방침을 알고 극장폐쇄 등 배제 이행과정을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묵인하고 실행을 지시함. 		
	(2017직공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변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2015.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이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특정예술인단체 배제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박근형에게 '포기각서' 문서를 받도록 지시하고, 예술위 자체감사 결과를 축소 허위결과로 보고하는 것에 관여함.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 제도 개편 사건	2015.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예술위에 관철하기 위해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변경 등을 지시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함. ■ 또한,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배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기공모 축소, 공모사업을 기획사업으로 전환, 심의위원 풀(pool)제 전환 등의 지시를 YYY에게 지시 및 개편하도록 함 		
15	PPP	(2017특2)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그린피스' (윤한술) 전면 배제	2014.11월 경 2014.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월 경 신청자 명단 제출하고, ■ 2014.12.22.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정치적이 문제 등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 을 전달, 제의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연 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16	QQQ	(2017직공1)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201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연극제 앞서 진행된 공연에서 파손된 장치를 교체하는 등 대체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한 사실과 (주)세원SDS의 점검 후 안전진단보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급자(MMM)의 지시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날짜를 극장폐쇄의 당위성을 맞추기 위한 날짜로 수정함.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17	RRR	(2017직공1)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201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4.3. 서울연극제 재대관 극장 폐쇄와 관련하여 지원배제 방안을 고안하고, 문체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는 등 배제 지시를 이행함.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협의 추가-(2017직공7) 2016년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2016.8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위한 신청자 명단 제출을 방조 심의에서 배제대상 단체의 문제점 등을 발언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배제지시를 이행 	
		협의 추가-(2017공15)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2016년 5.20. 2016년 6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과정에서 배제 책임자로 심의에 개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공립기관 종사자를 심의위원으로 섭외 등 지원배제를 이행하려는 행위를 모의함. 	
18	TTT	(2017공6) 공연연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극단 하땅세’ 배제	2016.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전 배제대상 단체가 지원 후순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지시 2016.6.17. 심의위원들에게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여 배제지시를 이행함.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8) 2016년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극단허리’ 선정 배제	2016.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전 배제대상 단체가 지원 후순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를 사업담당자에게 지시 2016.6.16. 심의위원들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여 배제지시를 이행함. 	
		(2017전3) 2016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화성 열린문화터’ 선정 배제	2015.12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담당자에게 신청자 명단 제출을 지시 실무자에게 후순위로 검토할 만한 사유 검토를 지시 2015.12월 경 심의회의에서 문체부의 배제지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행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2014.3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제대상이 제외된 2014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 	
		협의 추가-(2017직공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2015.5.11. 2015.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4.11.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 배제지시 단체가 선정되자 2015.6.18. 심사위원을 재소집하고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사업포기를 중용 	
		(2017직문1)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2015.1.22. 2015.4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1.22. 1차 심의 통과자를 문체부에 전달 2015.4월 경 심의위원들에게 문체부의 지시사항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배제지시 이행 	
		(2017공35, 36 병합)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사업 ‘서울변방연극제’ 선정 배제	2015.1.16. ~ 1.23. 2015.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담당부장에게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은 2015.1.16. 1차 심의, 2015.1.23. 2차 심의에서 지원배제 이행,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사업은 2015.3.20. 심의에서 지원배제를 이행 	

연 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건수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을 고안, 배제지시를 이행함. 	
		(2017직문2)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파행	2014.11월 경 2015.3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월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 ■ 2015. 3월 경 지원배제를 이행함. 	
19	SSS	(2017공15)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2016.4월 경 2016.5.20.	<p><국제교류부장 직위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4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 ■ 2016.5.20. 1차 심의와 2015.6월 2차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전3) 2016년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등 ‘화성 열린 문화터’ 선정 배제	2015.12월 경 (협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명단을 발송한 주체는 임주연이 아니고 문학시각예술 본부장 HHH가 전달하여 본 사건과는 무관한 자료 확인됨. 	
		(2017공32) 2015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및 검열의혹	2015.10.17. 2015.10.18.	<p><공연예술센터 문화사업부장 직위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0.17.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사유로 공연예술센터, 운영총괄본부장과 당일 논의를 후 10.18. 공연 방해함. ■ 또한, 후속공연 2개 작품 대본 요구 ‘사전 검열’ 행위를 함. 	
20	YYY	(2017공24)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지원 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2015.8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8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함. * 배제지시 이행은 후임 부장인 KKK이 실행함.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017공35, 36 병합)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사업 ‘서울변방연극제’ 선정 배제	2014.12월 경 2015.1.16. 2015.1.23. 2015.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2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함. ■ 2015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은 2015.1.16. 1차 심의를, 1.23. 2차 심의를 하여 지원배제를 이행하였고,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은 2015.3.20.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함. 	
		(2017공8) 2015년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극단 허리’ 선정 배제	201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2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함. * 배제지시 이행은 후임 부장 KKK이 2015.10.15.~2015.10.19. 지원배제 대상자(단체)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 	
		(2017직공2)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2015.4.11. 2015.6.18. 2015.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4.11.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하였으나 ■ 배제대상이 선정되자 2015.6.18. 심사번복 요구 ■ 박근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2015.6.22. 사업포기 중용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2014.3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3월 경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 ■ 예술위원장과 예술위 위원들에게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함. 	
		(2017직문1)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2014.11월 경 2015.6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월 경 신청자 명단 제출 ■ 배제대상이 탈락시키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 선정건수를 축소함으로써 배제지시를 이행함. 	
		(2017직문2)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파행	2014.12월 경 2015. 3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2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 ■ 2015. 3월 경 심의에서 배제지시를 이행 	
21	BBB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2012.12.5. ~ 201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3월 경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심의위원을 선정토록 한 사실, 특히 연극 분야는 배제 대상자가 많아 별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즉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6조 (청렴의무 준수와 책임)

연 번	대상자	사건명	위반행위 발생일자	위반행위 내용	위반 규정
				각 중지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고 법령과 규정으로 명시된 의무를 방기(放棄) 함.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22	ZZ	(2017직공7)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2016.1월~2월	<p><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일반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15. 경 신청자 명단 송부 ■ 2016.2월 경 심의위원에게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 <p><연극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월 경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 2016.2월 경 심의위원에게 문체부의 배제지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배제지시를 이행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23	WWW	(2017직공 7) 2016년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2016.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7월~8월 경 지원한 신청자 명단을 송부 ■ 심의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비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유도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8조(부당요구 처리)

<붙임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에서의 사건별 관련자 및 배제지시 전달과정

연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1	김형중 등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심의위원 풀 선정	오○○(문체부) HHH(본부장) CCC(부장)	○ 오○○(지시)→HHH, CCC : 후보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 심의 진행상황 수시 보고, 여러 수단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 탈락 시키도록 지시(2016.2. 경 및 2016.7. 경) ○ HHH(지시)→CCC : 심의위원 풀 배제 대상자를 안전에서 제외하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상정 지시 ○ CCC : 심의위원 풀 배제 대상자를 안전에서 제외하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상정
2	김성규 등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오○○(문체부) HHH CCC	○ HHH(지시)→CCC: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배제 기준 고안 및 배제 이행 지시 ○ CCC: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제시(기존 문학상 수상자 등 지원에서 후순위로 지정 등) ○ CCC(지시)→담당자: 배제 가능한 방안 고안하게 하고, 이 기준으로 선정 후보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만든 엑셀파일 등을 문체부 오○○에게 송부하도록 지시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2016년)	문체부 CCC	○ 문체부(지시)→CCC: 후보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 탈락 시키도록 지시 ○ CCC: 후보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 배제 대상자를 안전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인○○(문체부) OOO III ZZ	○ 인○○(지시)→ZZ: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2016.1.15.경) ○ ZZ(보고)→III→OOO: 배제 지시 보고하였으나 묵인 ○ ZZ: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 ZZ, III: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중용
		연극 창작산실(일반) - 시범 공연	오○○(문체부) OOO III ZZ	○ 오○○(지시)→ZZ: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 ○ ZZ(보고)→III→OOO: 배제 지시 보고하였으나 묵인 ○ ZZ: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 ZZ, III: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중용
		(복권)농산어촌순회사업	김○○(문체부) LLL PPP	○ 김○○, LLL(지시)→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 ○ 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탈락 중용
		(복권)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김○○(문체부) LLL PPP	○ 김○○, LLL(지시)→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 ○ 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탈락 중용
		2015 장애인문화예술향유지	김○○(문체부)	○ 김○○(지시)→LLL→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대상자를

연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원 사업	LLL PPP	탈락시키도록 지시 ○PPP: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LLL: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탈락 중용
		지역문화예술지원 실태 조사	NNN	○ NNN: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실태조사 실시(2013. 하반기 ~ 2014.2.경)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2014년)	●●●●(청와대) 모○○(청와대) 김○○(청와대) 용○○(청와대) 신○○(청와대) 유○○(문체부) 김○○(문체부) 조○○(문체부) 오○○(문체부) ★★★★ BBB NNN OOO TTT YYY	○ ●●●●(지시)→모○○→유○○: 문예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며, 문예기금 심의위원 구성시 철저한 검증 지시 ○유○○(보고)→●●●●: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 보고(2014.2.21.) ○조○○, 오○○(지시)→TTT: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송부 지시(2014.3.경) ○조○○, 오○○(보고)→김○○→모○○, ●●●●: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보고 ○모○○(지시)→김○○: 책임심의위원명단 신○○(청와대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에게 전달 ○신○○→김○○→용○○: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책임심의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 전달 ○용○○(지시)→오○○: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를 책임심의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 ○오○○(보고)→조○○, 김○○: 용○○ 지시사항 보고 ○오○○(지시)→TTT, YYY: 용○○ 지시사항 하달 ○TTT, YYY(보고)→★★★★: 용○○ 지시사항 보고(★★★★ 승인) ○TTT, YYY: 2014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문체부에 송부, 예술위원장, 위원들에게 배제지시 전달 ○NNN: YYY으로부터 보고 받아 사실 인지하였으나 묵인 ○OOO: YYY으로부터 보고 받아 사실 인지하였으나 묵인 ○BBB: ●●●●, 모○○, 용○○, 유○○, 조○○, 오○○, 김○○, 신○○, 김○○, ★★★★★과 공모하여 각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TTT, YYY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바, 각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혐의사실에 해당 ○BBB: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배제 지시 및 문체부 및 예술위 소속 임직원의 배제 이행 사실에 대해 TTT, YYY으로부터 보고 받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법 제123조, 제32조에 따른 직권남용 방조 혐의사실이 있음
		예술위 지원사업 제도 변경	문체부 OOO YYY	○ 문체부(지시)→OOO: 정기 공모 사업 축소, 공모사업의 기획사업으로의 전환, 심의위원pool제 등 예술위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지시(2016.1.~2.경) ○OOO(지시)→YYY: 제도개편 지시 ○YYY: 제도 개편에 일조
		2016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	인○○(문체부) WWW	○ WWW(제공)→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인○○에게 개인 정보 제공(2016.7.~8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4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극단 놀땅’ 선정 배제 사건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인○○(문체부) DDD	○ DDD(제공)→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인○○에게 개인 정보 제공(2016.2.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71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체부)	○인○○(지시)→Ⅲ→DDD: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

연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극단 허리' 선정 배제 사건	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	III DDD	<p>○인○○(지시)→III: 심의위원에게 배제 대상자의 미비점을 설명하여 탈락을 종용하는 등 배제 이행</p> <p>○III→OOO: 문체부 지시사항에 대해 보고, OOO은 이를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p> <p>○DDD(제공)→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인○○에게 개인정보 제공(2016.2.경.)</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71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p> <p>○DDD: 사업 신청자 명단 문체부에 송부, 신청단체 과거 이력사항 등 참고자료를 배제 목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제시하는 등 배제 이행</p> <p>○DDD(지시)→담당 직원: 신청단체들의 과거 이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참고자료 작성하도록 지시</p>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사업	오○○(문체부) HHH KKK YYY	<p>○ 오○○(지시)→HHH: 심의에서 내부적인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배제 대상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배제 이행(2015.8.경)</p> <p>○오○○(지시)→KKK: 실무자에게 사전 검토를 통해 배제 논리를 발굴하도록 지시, 정부 지시 이행에 우호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배제 대상 명단을 미리 공유하는 등 배제 이행(2015.6.경)</p> <p>○오○○(지시)→YYY: 배제 이행을 위해 사업개편, 신청자 및 심의위원 후보 명단,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하는 등 배제 이행(2015.8.경)</p>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인○○(문체부) OOO TTT	<p>○ 인○○(지시)→TTT: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라고 지시(2016.5.경)</p> <p>○TTT(보고)→OOO: 문체부 지시에 대해 보고, OOO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지 지시를 하지 않음</p> <p>○TTT: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등 배제 이행</p> <p>- 지원배제 대상 단체 목록을 심의위원 최준호에게 제공하며, 정부 지원배제 방침 전달, 서류 미비나 현장평가 미흡 등 배제 대상자를 심의에서 탈락시킬 만한 지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를 기록한 자료를 최준호에게 제공</p>
6	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변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2015년 연극창작산실-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	이○○(문체부) 오○○(문체부) ○○○ OOO EEE TTT YYY	<p>○오○○(지시)→TTT, YYY: 이○○의 용인하에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p> <p>○TTT, YYY: OOO의 용인하에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종용, 박근형에게 포기각서 받음(2015.5.~6.경)</p> <p>○○○○(지시)→EEE: YYY 및 TTT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배제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감사보고서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2015.11.경.)</p> <p>○EEE: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p>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극단 진실보' 선정 배제 사건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오○○(문체부) 최○○(문체부) FFF	<p>○ FFF(제공)→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최○○에게 개인정보 제공(2016.1.경.)</p> <p>○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p> <p>○오○○, 최○○(지시)→FFF: 오○○, 최○○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 배제 이행을 고려하여 심의계획 수립, 수시로 심의 진행상황 보고, 배제 논리를 고안해 심의위원에게 설명, 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p>

연 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8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의혹 사건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임○○(문체부) 이○○(문체부) MMM FFF	○임○○, 이○○(지시)→MMM: 특정 단체를 지원배제하라는 지시 ○MMM(지시)→FFF: 배제를 이행하도록 지시(2014.11.경) ○이○○(지시)→FFF: 이○○의 지시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 지원배제를 위해 심의제도를 개편하고 심의위원에게 회유책 제시(2014.10.~11.경) ○FFF(제공)→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최○○에게 개인정보 제공(2014.10.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9	2015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2015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김○○(청와대) 김○○(청와대) 김○○(문체부) 김○○(문체부) 이○○(문체부) 오○○(문체부) 임○○(문체부) 이○○(문체부) ★★★★ OOO MMM FFF RRR QQQ	○ 임○○(지시)→이○○→MMM: 정기대관 사업 신청자 및 심의위원 후보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극단 완자무늬, 서울연극협회)를 탈락 시키도록 지시 ○MMM, FFF(보고)→★★★★: 지원배제 지시 보고 ○★★★★(지시)→MMM, FFF: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2014.10.23., 10.31, 11.2.) ○MMM, FFF: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 심의위원 설득(2014.11.7.) ○김○○(지시)→김○○→김○○→오○○: 위원회가 서울연극협회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을 대관해주시기로 하자 서울연극협회에 극장을 대관해 주지 말것을 지시 ○김○○(보고)→김○○: 서울연극협회 대관 배제 지시에 대해 보고(김○○ 이에 대한 용인) ○오○○(보고)→이○○: 서울연극협회 대관 배제 지시에 대해 보고(이○○ 이에 대한 용인) ○오○○(지시)→OOO, RRR: 서울연극협회 대관 배제 지시 ○★★★★(지시)→MMM, RRR: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지시(2015.4.2.경 김○○ 면담 이후 / OOO 이에 대한 용인) ○MMM(지시)→QQQ: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2015.4.3.경)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은 공연중>	인○○(문체부) MMM LLL SSS GGG	○ 인○○(지시)→SSS: 팝업씨어터 섭외 후보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섭외하지 않도록 지시 ○SSS: 팝업씨어터 섭외 후보자 명단 송부, 김정 연출의 <그 아이> 공연 방해(2015.10.17.경), 후속 공연의 대본 제출 요구 ○MMM: 김정 연출의 <그 아이> 공연 방해(2015.10.17.경) ○LLL: 김정 연출의 <그 아이> 공연을 취소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공연 방해(2015.10.17.경) ○GGG: '팝업씨어터 사업에 참여중인 공연단체에 대한 공연방해 및 취소 요구 등의 진위 여부 조사' 후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11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의혹 사건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오○○(문체부) HHH CCC SSS	○ 오○○(지시)→HHH→CCC(문학): 문학 및 시각예술 분야 심의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미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제 이행. SSS은 이와 같은 지시에 대해 HHH로부터 공유받았으나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오○○(문체부)	○ 오○○(지시)→HHH: 신청자 명단 송부, 문학 및 시각 예술분야 심의에서 지원배제 대상의 미

연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등 '화성 열린문화터' 선정 배제 의혹 사건		HHH SSS	비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제 이행. SSS은 이와 같은 지시에 대해 HHH로부터 공유받았으나 중지하도록 하지 않음 ○HHH(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5.11.~12.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2016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하○○(문체부) TTT	○ 하○○(지시)→TTT: 담당직원에게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하도록 지시,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13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서울연극협회 선정 배제 사건	2015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오○○(문체부) HHH	○ HHH(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5.3.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공연예술(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지원' 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사건	2015 공연예술(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지원	오○○(문체부) HHH YYY	○ 오○○(전달)→HHH(공유)→담당 부장(창작지원부) 및 담당자: 해당사업 블랙리스트 병단을 전달받아 공유(2015.8-9. 경) ○ YYY(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5.8.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	2015 공연기획전문인력/무대 예술전문인력지원	오○○(문체부) JJJ	○ JJJ(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5.2.~4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16	'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	2015 AYAF(차세대 예술인력 육성)-공연예술 창작자 부문	오○○(문체부) JJJ	○ JJJ(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5.2.~4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업	인○○(문체부) OOO TTT	○ 인○○(지시)→TTT: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라고 지시(2016.5.경) ○TTT(보고)→OOO: 문체부 지시에 대해 보고, OOO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지 지시를 하지 않음 ○TTT: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회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중용하는 등 배제 이행
17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분야 심사위원	오○○(문체부) KKK	○ 오○○(지시)→KKK: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배제 대상자 탈락시키도록 지시(2015.6.경) ○KKK: 심사위원 명단 송부, 배제 대상자를 실제로 탈락시키는데 일조
18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AAA TTT YYY	○ YYY, TTT(보고)→AAA: 청와대 및 국정원, 문체부로부터 특정 문인들에 대한 배제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 ○AAA: 제3차 책임심의위원 심의결과인 최종 통과자 102명(안)을 거부하고, ■■■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한 70명(안)을 서면결의로 확정함으로써 배제 지시 이행 ○TTT, YYY(제공)→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오○○에게 개인정보 제공(2014.11.경.)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TTT, YYY, 담당 직원: 책임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문체부로부터의 배제지시를 전

연 번	사건명	사업명	사건 관련자	배제지시 전달과정
				달하면서 블랙리스트 실행 설득. ○TTT, YYY: 해당 사업의 선정인원 축소, 여러 배제기준 고안, 책임심의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위원회 서면 결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최종 선정자를 30명 가량 축소하여 선정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	2015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사업 지원/2015다원예술창작지원	오○○(문체부) NNN TTT YYY	○ 오○○(지시)→TTT, YYY: 지원배제 지시 ○ YYY(보고)→TTT→NNN: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 보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도록 승인 ○ YYY: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 송부, 수시로 심의 진행상황 보고,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절차 중단, 배제논리를 고안해 배제 대상자의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중용함
20	윤한솔 연출가 전면 배제 사건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김○○(문체부) PPP	○ PPP(제공)→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김○○에게 개인정보 제공(2014.11경.)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위반으로제71조제2호의구성요건에해당
		201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김○○(문체부) PPP	○ 김○○(지시)→PPP: 문체부에 신청자 명단 송부, 심의장에 배석하여 심의위원에게 배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배제 요청
21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파행 사건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오○○(문체부) TTT YYY	○ 오○○(지시)→TTT, YYY: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탈락시키도록 지시 ○ TTT, YYY: 해당 사업의 선정건수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법 고안(YYY 비위행위 내용에는 TTT의 지시에 따라 고안한 것으로 나와있음)